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4. 1

보건복지부

1.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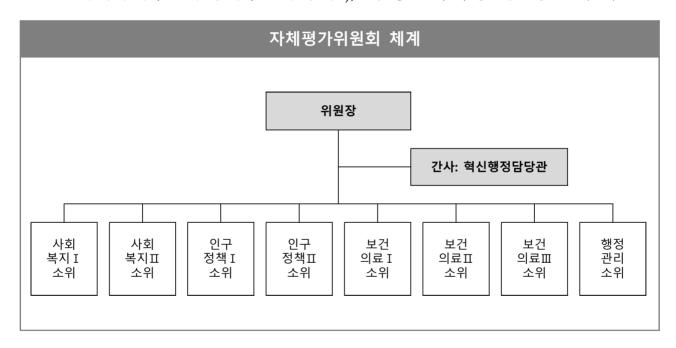
(1) 중점 평가방향

- □ 다각도적인 성과지표 관리 및 과제 수립 단계부터 결과까지 환류 과정을 평가
 - 정책 성과·효과 중심의 평가기조 유지
 - 평가 항목별 배점에서 **정책성과·효과 항목 배점을 55점**(100점 만점 중 55%)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
 - * 정책집행 항목 30점, 정책형성(의견수렴 등) 항목 15점
 -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시, 중장기 목표달성도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장기 성과관리를 강화
 - 핵심 관리과제 선정, 집중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견인
 -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필요한 핵심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목표 달성도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시 목표치 달성 난이도, 적극적 목표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반영, 이행하도록 환류의 적절성 평가
- □ 대면평가 및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공정성 제고
 - 7개 분과*별로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설명시간 및 질의** 응답 시간을 부여, 보다 심층적인 평가 진행
 - * 보건의료1, 보건의료2, 보건의료3, 사회복지1, 사회복지2, 인구정책1, 인구정책2
 -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각 부서들의 수용률을 제고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별 평가 실시
- (구성) 내부위원 5인(실장급) 및 민간위원 25인(위원장 1인 포함), 총 30인으로 구성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주요정책(보건의료1, 보건의료2, 보건의료3, 사회복지1, 사회복지2, 인구정책1, 인구정책2), 행정관리역량 등 총 8개 부문



□ 평가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에 대한 **실적설명회**를 개최, 과제 담당 과장-평가위원 간 대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과별 과제 평가**
- 1차 서면 검토 및 분과별 대면 설명,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ㅇ 평가대상
- 총 72개 관리과제
-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형성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 과제의 적절성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0700	의견수렴 적절성	▶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 정책추진 일정 준수 여부(분기별)
정책집행	전책소통 충실성 → 정책 홍보 활동의 적극성 → 정책 홍보 성과	
0.160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과정의 적절성 ▶ 여건 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 부처 내·외부 협의·조정 적절성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정책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책성과	성과지표 달성도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대표성, 측정 가능성, 신뢰성) 및 적극성, 목표달성도 평가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 ▶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달성도 ▶ 핵심 관리과제 정책목표 달성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 '23년도 총 70개 과(팀)의 7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7개(9.7%), 우수 4개(5.6%), 다소 우수 14개(19.4%), 보통 17개(23.6%), 다소 미흡 14개(19.4%), 미흡 9개(12.5%), 부진 7개(9.7%)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내실화 추진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등인 것으로 평가됨
- □ 총 72개 관리과제의 21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9.4%로,
 - 19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목표치를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한 점, 만족도 조사 내 소비자의 다양한 개선요구로 인해 목표치 달성 불가, 코로나19 관련 지표의 경우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내실화 추진 등 **11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 강화 추진
 -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수립·이행, 지불제도 다변화, 병상 관리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제2차 국민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수립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치료 전주기 지원 체계 혁신
 - '23년 출생아 23.3만명에게 보편적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3개 자문위원회 운영, '22.8~'23.10), 사회적 논의
 (이해관계자 FGI 24회, 16,000명 교육, 공청회 등)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운영계획(2023~2027)」마련
 -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발표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수급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의료기관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보상 체계로 개편하여,가치・성과 기반 평가체계로 전환 추진
 - 「필수의료 지원대책」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행점검
 - 정신질환의 전주기 지원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 역대 최초로 정신건강정책을 국가 아젠다화

(3) 개선・보완 사항

- □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등 16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대부분 구체적인 홍보 성과 기술 필요, 성과지표 검토 등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설정 근거 및 도전성에 대한 고민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기술 필요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 홍보 성과 내용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장애 인권 관련 국민 체감 홍보전략 다변화 필요
 -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부서를 대표하는 지표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 목표설정 근거 제시 및 성과지표의 유형 검토 필요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 홍보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I-1-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소 미흡
I-1-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매우우수
I-1-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보통
I-1-④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	다소 우수
I-2-①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	미흡
I-2-②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통
I-2-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부진
I-2-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다소 미흡
I-2-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다소 우수
I-3-① [핵심]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보통
I-3-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매우우수
I-3-③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화	다소 미흡
I-3-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부진
I-4-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보통
I-4-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부진
I-4-③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다소 미흡
I-4-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우수
I-4-⑤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	미흡
I-5-①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보통
I-5-② [핵심]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다소 우수
I-5-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보통
Ⅱ-1-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우수
Ⅲ-1-② [핵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보통
Ⅱ-1-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부진
Ⅱ-1-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통
Ⅱ-1-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다소 미흡
Ⅱ-1-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다소 우수
Ⅲ-2-① [핵심]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매우우수

Ⅲ-2-②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다소 우수
Ⅱ-2-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미흡
Ⅱ-2-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보통
Ⅱ-2-⑤ [핵심]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우수
Ⅱ-2-⑥ 보장성 확대 항목 사후관리 강화	다소 미흡
Ⅱ-3-①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매우우수
Ⅱ-3-②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다소 미흡
Ⅱ-3-③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다소 우수
표-3-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다소 미흡
Ⅱ-3-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미흡
Ⅱ-3-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보통
Ⅱ-4-①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다소 미흡
Ⅱ-4-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보통
Ⅲ-4-③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다소 우수
Ⅱ-4-④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다소 미흡
Ⅲ-5-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우수
표-5-②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통
Ⅲ-5-③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보통
Ⅲ-6-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미흡
Ⅱ-6-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부진
Ⅲ-1-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미흡
Ⅲ-1-②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보통
Ⅲ-1-③ 임신·출산 건강 지원	매우우수
Ⅲ-2-①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다소 우수
Ⅲ-2-②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보통
Ⅲ-2-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다소 미흡
Ⅲ-3-① 취약 노인 돌봄 강화	다소 우수
Ⅲ-3-②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다소 우수
Ⅲ-3-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다소 우수
Ⅲ-3-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다소 미흡
Ⅲ-3-⑤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미흡

ㅠ 4 ᄉ외 죄ᅅ ᆸᄋᆸᆸᇫ ᅱᅅ ᄁᇸ	
Ⅲ-4-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다소 우수
Ⅲ-4-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부진
Ⅲ-4-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다소 미흡
Ⅲ-5-① [핵심]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내실화 추진	매우우수
Ⅲ-5-②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보통
Ⅲ-5-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미흡
IV-1-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매우우수
IV-1-②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구축	다소 미흡
IV-1-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통
IV-1-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미흡
IV-2-①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다소 우수
IV-2-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다소 우수
IV-2-③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부진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 주요 정책방향 수립
 - '23년 복지부 **약자복지 주요 추진방향·계획 설정***(1.9)
 - * 전통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 新 복지수요에 맞춤형 대응(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이슈 파악 및 중장기 정책대안 논의
 - 정책환경 변화 및 주요 복지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포럼" 운영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 종사자 관리·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ㅇ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필요
- 홍보 성과 부족
-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 기술 부족

- (의견수렴)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단체, 노동시장 약자, 잠재적 약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음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기술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 기술 및 고민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별 과제 내용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 단,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 파악을 위해 제시된 통계 및 국제동향의 내용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논리적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임
2.	의견수렴 적절성	복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적정하나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단체, 노동시장 약자, 잠재적 약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이 준수되고 있지만, 과 주도의 일상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음. 시민단체, 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정이 있었으면 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지의 기술이 보이지 않음
5.		현장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있음. 그런데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나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특별한 여건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본래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대응이라고 보여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노력이 대체로 잘 드러남. 부처 '내부'와 어떠한 협의나 조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달성도가 100% 이상이어서 지난 한해 동안의 노력이 보임. 복지정책 총괄 조정 건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게 기술되어 있음 -총괄과 성격상 성과지표 설정이 쉽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성과 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임. 총괄조정이 보다 직접적인 총괄조정 건수가 들어가야 할 것임. 차상위계층 수급가구가 주된 지표가 되어야 할지도 고민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 및 향후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보임. 분배, 종사자 처우개선, 농어촌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1) 평가결과

2

□ 주요성과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개선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수립·발표('23.9)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 강화 추진
-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3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하고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
- 청년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외봉사단 참가자 특례 개선, 자기돌봄청년 소득공제액 확대 등
- 생계지원금 인상, 연료비 인상, 위기사유 확대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일부 지표는 모호해보이는 등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필요
- (정책목표) 변화 중심의 지표를 고민할 필요
- 현재 성과지표 외 성과 달성도의 경우 단순한 현황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빈 곤층 보호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난제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나 보고서 기술에서 좀 더 자세한 기술이 있었으면 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여러 방식을 통해 정책과 관련된 의견수렴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유튜브 조회수나 온라인상 언급량 등에서 상당한 홍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한 노력이 보임 -단, 보다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질적연구 등이 부재한 것은 아쉬움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 타 부처 부내 다른 부서 등과 적극적 협조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객관적 수치 제공, 그리고 외부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신규지표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건수는 다소 모호해 보임. 사전에 예측되기보다는 상황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규수급자 발굴률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성과 달성도의 경우 단순한 현황 중심(탈락자 수, 수급자 수 등)으로 제시되어, 실제로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음. 좀 더 변화 중심(예를 들어, 지난해 대비 탈락자 수 감소율)의 지표를 고민해도 좋을 것임.

보통

(1) 평가결과

3

□ 주요성과

- (3개년 계획)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4~'26)' 및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수립
- (청년내일저축 확대) 5월 모집 후 대상 선정하여 8월 통장 개설·정부지원금 매칭 중, 現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
- (창업촉진) 자활기업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상향조정(최대 1억→3억)하고 참여자 근로유지 인센티브를 신설(6월, 12월 각 100만원)하여 창업 및 근속 유도
- (노숙인 보호대책) '23년 하절기, '23년 ~ '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및 지자체 시행 사항 점검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기술 필요
- (현장 모니터링)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이나 반영이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음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필요

평가지	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조 정책분석	적절성 및 충실성	-3차 계획수립, 자산형성사업 안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었으며 노숙인 등 정책여건분석도 충실히 수행되었음. 단 외부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 유사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분석도 선행되면 좋을 것 같음 -과제 선정이 적절해보임 노숙인 등 복지지원이 인력이나 예산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임.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이나 의견들로부터의 근거에 기반한 정책 여건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반영의 과정이 잘 보이지 않음
2. 의견수렴	l 적절성	자활과 자산형성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 반면 노숙인도 주요 과업이므로 사업추진과 개선을 위한 과정이 있었으면 함
3. 추진일정 충실성	성 관리의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홍보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지가 좀 더 제시될 필요가 있음
5. 현장 모니 상황변호 적절성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이나 반영이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음
6. 관련기 노력도	관 협업	다양한 협업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정이나 정책 반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제시가 좀 더 필요해 보임
7. 성과의 우수성	객관적	-외부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자활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과정이 있었으나 노숙인은 과업이 없었는지 궁금함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 설정은 계획에 의하기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소 조정된 것 같음. 20~22년 사이 목표가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음 -달성도가 100% 이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노력이 보임. 단, 노숙인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임 -희망내일 키움통장지원율은 목표치 설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9. 정책목표	: 달성도	핵심사업인 자활과 관련된 변화가 잘 반영되어 있음. 반면 자산형성, 노숙인사업의 성과나 개선점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으며 이에 대한 정책목표, 과정이 설정되었으면 함

4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방안 마련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 참여 시군구를 38→73개로 확대하고(7월) '24년 전국사업 확대 기반 마련
- (타법수급자 자격관리체계 개편) 타법 수급권자(기존 1종 부여)도 기초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1, 2종 차등 적용
- (부당청구 관리)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 현지·기획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관리 및 사전예방 강화로 재정누수 방지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충실성을 높일 필요
- (홍보 성과) 홍보 행위를 통해 드러난 성과 제시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절성, 구체성 검토 필요 및 도전적 목표치 제시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보장성 강화와 재정효율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위해 담당업무가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 관련 연구도 적정히 진행되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은 충실히 수행되었으나 다른 과제는 일상적 활동으로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의견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임. 그런데 용역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되는 분과 운영 회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는 서로 구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에 일부 미진한 사항이 발생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음
5.		현장 협의과정은 적절히, 충실히 수행되었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은 일상업무로 보임. 긴급한 조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차 계획 수립과정에 많은 논의가 있을 듯 한데,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는 달성되었지만, 여전히 지표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의료급여 제도개선 추진율' 지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었으면 함 -의료급여 제도 개선추진율 지표의 측정 방식이 매우 재량적일 수 있음. 즉, 1개라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달성했다고 측정하는 방식은 도전적 성과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높음. 다만,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다른 사례관리 와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고민, 지자체와 건보공단과의 전달체계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보임

(1) 평가결과

5

□ 주요성과

- 위기정보가 입수된 복지 위기 의심 가구 중 고위험 가구 선별 하여 지자체에 명단 제공, 상담, 방문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
- 복지위기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5종 추가 확대(39→44종), 위기정보 입수 주기 2개월→1개월 단축
-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한 최초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년~'27년)」수립·발표('23.5)
 - ※ (목표) '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컨설팅, 평가, 매뉴얼 배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사각지대에 과제의 초점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며 지역복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부족 등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반영 정도가 잘 드러나지 않음, 여건 상황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정성 및 논리적 기술 필요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지역복지 역량 강화에 대한 서술 강화 필요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반영 정도를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여건 상황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정성 및 논리적 기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고독사 지원방안마련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으나 다른 과업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음 -사각지대에 과제의 초점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며, 지역복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약함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 일정이 대체로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연구 포함)의 경우 추진만 제시되었으며 종결에 관한 추진실적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성과를 더 드러내면 좋을 것으로 보임
5.		다양한 현장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나 정책 반영 정도가 잘 드러나지 않음. 또한 여건 상황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부처 및 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조정 노력은 잘 보인 반면, 부처 내부에서의 협의 조정을 통한 구체적 반영이 잘 드러나지 않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만족도 지표는 주관적 지표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 보이므로 성과지표로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성과지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기술이 더 필요해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성과달성도가 잘 드러나고 있으나 정책목표 기대효과 라기보다는 현재 과제의 추진 계획에 초점화되어 있음 -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로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효과를 실현할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복지사업 표준화)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상이한 사업별 기준 조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등 통일적인 제도운영 기반 조성
- (신청 편의성 제고)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사전 안내 확대, 신청 방법·장소를 다각화하여 신청의 어려움 완화
-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복지사업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요원 제도 운영
- (사회보장급여법령 개정) 위기 지원대상자 발굴, 아동학대 발굴 등 법 개정 수요에 맞춰 사회보장급여법(7회) 및 하위 법령(3회) 개정

- (의견수렴)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복지멤버십 관련 시민단체, 수요자 등의 의견수렴도 검토가 되면 좋겠음
- (성과지표)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으며 성과지표 측정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늘어나는 복지사업에 대한 협의조정과 기준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과제의 적절성이 잘 드러남.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대비책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 멤버십 관련 시민단체, 수요자 등의 의견수렴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음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수렴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지침이 마련되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좀 더 소개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새롭기보다는 기존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보임. 올해 추가적으로 시행된 것을 분명히 기술했으면 좋겠음
5.		다양한 방식의 현장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정책 반영 노력이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더 기술할 필요가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부처,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으나 부처 내부 협업의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급여표준화에 대한 부분의 성과는 설명이 약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목표는 초과달성하고 있으나 체감도와 만족도는 주관적 지표 이므로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선이 있었으면 함 -'표준화 개선 과제' 자체가 매우 재량적으로 해석되어 집계될 수 있으니 표준화 개선 과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조작적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만족도 조사'의 경우, 30%는 불만족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만족도 점수의 측정 방식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해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전반적으로 향후 기대효과 등이 잘 기술되어 있으나 핵심과제인 '표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더 검토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임

7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발굴대상자 133만 명 선별
-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위기정보 입수자 대상 복지수요, 위기도 등 파악을 위한 AI 기반 초기상담을 통해 지자체 집중 상담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대국민 복지 체감도 향상 및 복지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서비스 12종 구축을 통해 역대 최다(49종)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의견수렴 적절성) 수렴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 부족
- (홍보성과) 구체성과 명확성 부족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수렴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 (홍보성과) 홍보성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며, 무엇을 누구에게 홍보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면 좋겠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설정 근거 및 도전성에 대한 고민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복지정보제공, 사각지대 발굴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새로운 모델도 의미가 깊은 것 같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수렴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추진계획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임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음 -무엇을 누구에게 홍보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이나 반영이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 과학기술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발된 기술은 지속적인 향상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 평가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중 온라인 신청률은 부서의 노력에 의하기 보다는 수요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 보임. 수동적 지표의 성격이 높음. 또한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어려움을 고려 시 동 성과지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신청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좀 더 논리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코로나 안정화나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증가 상황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온라인 신청률이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률이 왜 중요한 성과지표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임 -목표 설정 근거가 22년도에 비하여 매우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도에 대한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적극적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음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 부모급여 지원계획 수립('22.9월) 및 신청(온/오프라인)-정기급여 지급 개통('23.1월~), 보호출산제 도입 및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등 신규서비스 구축 중('23.9월~)
- 매년 변경되는 **258개 복지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및 난방비지원 등 민생경제 주요 대책 등 시스템 적기 지원
- 사회취약 계층 발굴 지원 및 권리 구제
- 수급탈락자 중 현재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 추출, 신청 안내 하여 수급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관련기관 협업) 어떤 기관(내부)과 협업했는지, 조정반영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술 부족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으며 다른 과업들도 기존 정책의 연속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족 등

- (관련기관 협업)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 기관(특히 부처 내부)과 협의했는지, 그리고 조정되어 반영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객관적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과 제시 필요
- (성과지표) 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 등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매년 변화되는 복지제도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이 반복 되지만, 동 작업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쉽지 않은 과업이 진행되고 있음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해 중요성을 판단하면서 유사한 과제들을 병합 하여 구조화시키는 등 가독성있게, 보다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보다 객관적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 제안을 기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관련 의견수렴과 전년도 지적사항이 충실히 조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일선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적은 것이 아쉬움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모니터링과 협의 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음 -현장방문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 기관(특히 부처 내부)과 협의했는지, 그리고 조정되어 반영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제2금융권과 연계사업은 필요한데,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음. 다른 과업들도 기존 정책의 연속으로 판단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는 초과달성이지만, 지표 중 '사회보장제도개편 지원 건수'는 실제 실적을 예측하기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으며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애매한 지표로 판단됨 -달성도가 100% 이상 초과달성이어서 지난 한해 동안의 노력이 보임. 다만 달성도가 매우 초과달성된 경우 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임,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 제도 개편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인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렇지 않은 경우 매우 재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기여도 및 기대효과가 높은 과업으로 판단됨 -사회보장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하여 다양한 실적 지표를 제시한 것이 의미있음. 운영협의체 개최를 실적으로 제시 하였는데, 이 개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영이 이루어 졌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실적 내용이라고 판단됨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9

□ 주요성과

- (시스템 안정화) 2차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 조치 및 기능 보완
- (문제상황) 2차 개통('22.9월) 이후, 시스템의 일부 기능 오류로 인한 사용자 문의 및 시스템 결함 등 현장의 불편 다수 발생
- (대응경과)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를 운영('22.10월~)하여, 시스템 관련 오류 파악 및 보완 조치 등을 진행
- (현재상황)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복지급여 지급중, 시스템 관련 사용자 문의도 시스템 개통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시스템 기능개선) 차세대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의 업무편의성 제고
- (온라인 신청 확대)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를 13종 확대('22년말 37종→'23년말 50종)하여 방문신청 불편 감소
- (모바일 행복이음 도입) 초기상담,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공무원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행복이음 구축('23.9월)

- (의견수렴) 차세대 시스템(지속 가능성, 미래, 관리방안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심도깊은 논의 및 의견 청취 필요
-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단기 성과지표로는 적정하나, 중장기 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적정성이 낮아 보이므로 다른 지표로의 전환 혹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목표) 운영을 통한 변화, 개선을 제시하는 등 더 의미 있는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여전히 추후 차세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매우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업으로 판단됨. 하지만 여전히 향후 개선, 대응 등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차세대시스템(지속 가능성과 미래, 관리방안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 과의 심도 깊은 논의 및 의견 청취가 필요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지가 좀 더 제시될 필요가 있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운영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면 좋겠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모바일행복이음 성과가 잘 드러나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단기 성과지표로는 적정하지만 중장기 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다른 지표로의 전환 혹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다양한 실적을 제시하면서 성과 달성도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음. 다만 '회의체 운영'보다는 운영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나 개선이 있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의미있는 실적 내용이라고 보여짐. 사회서비스 분야까지의 개통이 정책목표라면 이것을 통한 기대효과도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임 -여전히 추후 차세대 시스템이 어떻게/얼마나 지속가능하며 책무성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 평가결과

10

□ 주요성과

-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 수립
-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본부'를 구성·운영('23.1.~)하여 복지부 소관 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 기반 조성
- 돌봄뿐 아니라 주거·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도화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23.2.~)
-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발표
-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확대('22. 15개소 → '23. 24개소)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속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 사회공헌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우수한 외부평가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대안적 지표 개발, 업무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로 발전시키는 등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인구구조와 서비스 수요의 확대 특성에 기반, 사회서비스 보편화, 공급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 과제가 적절하며 실행 난이도도 중상 이상, 정책효과 분석 이루어졌으며, 과제 중 일부에 대해 정책에 반영
2.	의견수렴 적절성	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 의견수렴 양적, 질적 수준 높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난이도가 높은 일정을 모두 준수
4.	정책소통 충실성	언론보도, 유튜브, 참여자 수 등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참여자 수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움(홍보성과를 보여주는 자료 부족)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과제 성격상 관계부처, 당청 등과 충실한 협의 조정이 필요하며, 협의조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우수한 외부평가 객관적 입증은 어려우나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우수 수준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높은 편이 아님. 포럼 개최 등은 성과지표에서 삭제하고 대안적 지표 개발 필요 -성과지표의 성격은 결과지표라기보다는 투입이나 산출지표를 다수 활용하였음 -사회서비스고도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여 목표대로 달성하였음. 업무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거점기관 선정,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미있게 평가됨. 사업관리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및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새로운 시도로서 발전, B2G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 (기업 포함)은 국가R&D 등 이미 투자를 받은 업체이므로, B2C 혹은 기술기반 사회서비스와 매칭되는 기관(기업포함)에 투자하는 체계적 접근을 제안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ㅇ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심리지원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신규 시행)
- (긴급돌봄 서비스) 주 돌봄자 공백·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기획
-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12월)
- 제공인력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제공자의 위법행위(부정수급 등) 시 해당사항 공표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12.8., 국회 본회의 통과)
- ㅇ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고도화 추진
- (소득기준 폐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의 대상자 기준 중 소득기준을 (기존)중위소득 160% 이하 ⇨ (개편)전 소득계층으로 단계적 개선 추진
- (가격탄력제) 민간의 경쟁·창의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가격 고정이 아닌 일정범위 내 탄력 적용모델 마련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해 이뤄낸 효과라는 것을 보여줄 직접적 연관성 제시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포괄성 및 성과지표의 성격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와의 연계성도 적절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시의적절성도 높고 과제의 난이도도 중상 이상임. 또한 정책마련을 위한 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짐
2.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를 통해 이용자 수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홍보의 효과라는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 제시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30회가 넘는 현장 방문 등 적극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있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사업 성격 상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 중요, 충실히 수행 했다고 평가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부내 정부혁신 사례로 수상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높은 편이 아님. -성과지표는 포괄성이 다소 낮고 투입지표(연구용역실시건수 등 건수) 구성되어서 한계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로 이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들인 사업 만족도, 제공인력 역량강화 정도 등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어 우수한 편임. 언론 등을 통해서 서비스 실행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획득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신규개발 및 사업 확장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진흥법안 제정 추진
- 사회서비스 진흥법 제정(6.29. 발의)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종사자 역량 강화, 금융 및 재정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혁신기관 지정 등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등 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 평가자로부터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긍정 평가 자료는 부재
- (성과지표) 100% 달성하지 못한 지표 존재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기술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 평가자로부터의 객관적 평가에 대한 자료 제시 필요
- ㅇ (성과지표) 미달성한 지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법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들의 과제의 난이도가 중상 이상이며 정책마련을 위한 분석도 다각도로 이루어짐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 활동은 양적, 질적으로 우수함. 자체평가위원 지적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반영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못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사업 이후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임. 그러나 이것이 사업에 대한 홍보의 직접적인 효과 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현장방문, 공청회 등 모니터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여건상황변화에 대해 적시성있게 대처하였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사업 성격상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이 중요한데 기재부, 행안부등과 협업,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도 잘 시행함. 부처 내부와의 협력, 회의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도 증진
7.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편, 그 밖의 외부 평가자로 부터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긍정 평가 자료는 부재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은 높은 편, 달성도도 높고,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성도 높은 편. 단, 100% 달성하지 못한 지표 존재
9.	정책목표 달성도	법 제·개정으로 인해 향후 정책적 기대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

13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준수율 상향) 지방이양시설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시설도 예산 확보를 통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 (실태조사)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사 등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도화 기반조성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마련(5.31)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개선 방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반영(1212)
- 취업자수 둔화 등 '23년 고용상황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 일자리 정책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신설·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지연된 일정 존재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목표치의 낮은 도전성 및 부적절해 보이는 성과지표 존재

- (추진일정) 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기술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상위과제와 밀접히 관련되며, 난이도가 중상 이상. 그간 이 과제가 미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다소 미비함. 사회서비스 영역 중에서도 돌봄 분야, 비돌봄 분야 등 분야별 일자리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 필요함
2.	의견수렴 적절성	토론회,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수 실시하여 우수. 자체평가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연된 일정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를 통해 대체인력 등 파견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이것이 직접적인 홍보의 효과인지는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 제시 필요하므로, 정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점검, 간담회, 만족도 조사 이루어졌으나, 총 횟수가 명확하게 몇 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부처와의 협업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부처 내부와의 협력 활동은 적극적이고 우수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그 밖의 외부 평가 자료는 미비
8.	성과지표 달성도	-위원회 개최는 성과지표로서 부적절함. 적극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함 -목표치의 도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직접적인 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드림. 즉 현재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외 목표한 지표(종사자 임금인상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림
9.	정책목표 달성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국가정책 성과에 기여하는 점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한 점은 의미있게 판단됨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달성도 제시하여서 우수함

14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및 장애인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3~'27)」 수립·발표(′23.3월)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학대피해 쉼터, 단기거주시설) 대상 조사·발굴 규모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하여 '22년 마련한 사업모델을 토대로 '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 3법 수정대안 마련('23.11월)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법)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권리법과 상호의결 전제), 장애인자립지원법(제정법) 등 장애 3법 관련, 국회 협의 통해 정부 수정대안 마련 및 법안소위 통과('23.11월)(다만, 권리법에 '탈시설' 용어 사용 이견으로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재회부('23.11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준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구성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가 적절하고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충실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집단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복지부 주도의 다각적인 대응은 확인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이 대체로 잘 이루어졌으며 상황변화 대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부처, 당청 등 유관기관 및 부처 내부 협의와 조정이 잘 이루어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관련 준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구성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5

□ 주요성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의무적용기관 등 대상 제도 안내 등 시행 준비
- 각종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한 「장애인등편의법」 법령 개정
- (시행령) 「민법」상 가족 기준과 일치하지 않았던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일치시켜 그간 발생한 형평성 문제 해소(권익위)
- (시행규칙)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벽면 손잡이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타원형(비원형) 손잡이까지 허용하도록 기준 보완(기업규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 현장 점검, BF의무인증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및 BF인증기관 재인증('23.3월)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복지부·국토부 공동부령임에 따라 향후 2년간 국토부로 업무이관('23.4.~'25.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예산 및 법률 사항인 것을 감안하였으나 미준수된 추진일정 존재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로 제시될만한 내용 부족
- (현장 모니터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기 보고를 현장 모니터링 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홍보 성과) 홍보 성과 내용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장애 인권 관련 국민체감 홍보전략 다변화 필요
- (현장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강화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이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다만 미준수 사항이 예산 및 법률 사항인 것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선택의정서 외에 긍정적 평가가 더 있는지 등 홍보 성과로 제시될 만한 내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권 관련 국민체감 홍보전략 다변화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기 보고를 현장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부처, 당청 등 유관기관 및 부처 내부 협의와 조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달성되었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인 것으로 생각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6

□ 주요성과

- **장애인일자리** 대상자 **2천명 확대**('22년 2.8 → '23년 3만명)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일자리 **신규직무 3종***(총 42→45종) **개발**
 - *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5,442명 취업 지원**
- '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01% 달성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정비, 수급권자 중 미수급자 권리구제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 실시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도입('23.2월) 및 홍보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3년 대여자금 집행률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홍보 성과) 홍보 성과 내용 부족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매년 반복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성과지표) 미달성된 지표 존재 등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더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매년 반복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성과지표) 미달성된 지표가 존재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무개발 및 우선구매 미달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 개입 대응의 여지는 제한적임
2.	의견수렴 적절성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관련 설명회, 의견수렴 이루어짐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의 성과를 더 기술할 필요가 있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매년 반복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장애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미달성하였는데, 장애인소득의 객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더 적절할 것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의 목표성과가 달성되었으며 향후 기대효과가 높음

17

□ 주요성과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수급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상확대 및 특별지원 등 추진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라도 일상·사회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23.1월~)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경우 일시적(1회 최대 7일) 돌봄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 사법절차 지원 및 수사의뢰 등을 통한 실질적 권익옹호 지원

- (현장 모니터링) 구조화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응은 여전히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협업 노력도) 복지정보 및 시스템 구축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지 이것이 부내 협의 조정의 성과로 제시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가 적절하고 난이도가 높으며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충실함
2.	의견수렴 적절성	현장 의견수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적극적 홍보로 홍보성과 효과적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구조화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응은 여전히 준비단계에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복지정보 및 시스템 구축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지 이것이 부내 협의 조정의 성과로 제시될 수 있는지 의문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객관적 성과가 매우 우수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우수하게 달성되었으며, 성과지표가 적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8

□ 주요성과

- 장애인 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
- 장애계, 학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전략기획단 운영, 정책과제 발굴 진행
-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23.12.14 시행)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조기기 교부품목 확대 및 지원 기준액 상향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12.14. 시행) 등 시범사업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성과가 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수상이나 긍정적 대외평가로 기록될 내용이 강조되지 않음
- (성과지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량적인 방식 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장애인주치의 증가, 이용자 증가는 성과 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성과를 더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수상이나 긍정적 대외평가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난이도 및 종류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장애인건강증진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제도 정비를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임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 다각화 필요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를 통한 장애인주치의 증가, 이용자 증가는 성과이나 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기관 및 부처 내부 협의와 조정이 잘 이루어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수상이나 긍정적인 대외평가로 기록될 것이 타 과제에 비해 강조되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를 모두 달성했으나 난이도 측면에서 보통으로 평가됨 -성과지표가 모두 달성되었음. 성과지표가 좀 더 정량적인 방식 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새정부 사회보장정책 방향) 수립
-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14개 관계부처 및 사회보장 분야 9개 정책위원회 민간위원과 새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 논의('23.5.31)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수립
-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5개년 사회보장 정책 수립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안)('24~'28)',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등 범부처 주요 시책 심의·의결

- (정책소통 충실성) 사회보장기본계획 집행과 사회보장 비전 공유를 위한 적극적 홍보전략 필요
- (현장 모니터링)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구조화 및 적극적 대응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과정 부처간 협의 원활. 지자체, 이해집단 등다양하고 원활한 의견수렴 노력 제고 필요. 사보위 실무위, 본회의활성화 필요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재정추계는 기재부 통합재정추계 발표지연에 따라 발표지연
4.	정책소통 충실성	사회보장기본계획 집행과 사회보장 비전 공유를 위한 적극적 홍보 전략이 필요해 보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 구조화 및 적극적 대응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기관 및 부처 내부 협의와 조정이 잘 이루어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초과달성하였으나 목표의 난이도는 보통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의 목표성과가 달성되었으며 향후 기대효과가 매우 높음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운영 방향을 전환 하여,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및 중앙-지자체 협업 기능 강조
- 협의사업 증가에 따른 **협의 효율화 및 현장 혼란방지**를 위해 **협의 제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 추진**
- **협의 전 과정**(사전검토·협의 요청 → 결과회신)을 전산화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내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시스템」 개통("23.7.3.~)
-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협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협의지원단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체계적인 검토분석

- (추진일정 충실성) 지연된 일정 존재
- (홍보) 조정의 취지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정책비전 및 전략 홍보가 필요해보임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컨설팅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신속협의 등 정책대응 충실성 높은 편
2.	의견수렴 적절성	17개 지자체, 전문가, 특정 분야 간담회 등 의견수렴이 원활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사전협의시스템 개통 지연
4.	정책소통 충실성	조정의 취지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정책비전 및 전략 홍보가 필요해보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방향은 바람직하며 쟁점에 대한 적극적 조율이 보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기관 및 부처 내부 협의와 조정이 우수하게 잘 이루어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 100%. 성과지표 난이도 있는 편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21

□ 주요성과

-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시범평가 추진
-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추진
-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필요 과제(10개)에 성과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3개) 표창 실시('23.12)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강화
- 사회보장 통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 (수립) 부처·제도간 칸막이를 해소시킬 사회보장 종합 행정 데이터의 구축·품질관리로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 개선('23~'27)
- (추진) 교육부, 통계청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종합 행정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실무추진단 구성(~'23.12)

- (홍보 성과) 홍보 성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사업 성격상 평가업무라는 것이 갖는 성과 연결 측면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수상이나 긍정적인 대외평가로 기록될 것이 타 과제에 비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보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목표치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사회보장제도 시범평가, 평가체계 인프라 구축, 제도통합 관련 의견수렴이 원활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성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음 -행정통계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현안 통계 산출, 활용 기여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 제고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사업 성격상 평가업무라는 것이 갖는 성과 연결 측면이 취약할수밖에 없으나 수상이나 긍정적인 대외평가로 기록될 것이 타 과제에비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모두 달성되었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다소 낮게 설정 되어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우수

(1) 평가결과

22

□ 주요성과

- (정책기구) 과학적 근거·통계에 기반하여 의사인력 부족분을 추계하고,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
- (협의체운영)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칙 합의(1.31.~)
- (의료질평가) 의료기관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보상 체계로 개편하여, 가치·성과 기반 평가체계로 전환 추진
- (전문병원)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 효과를 높이도록 5기 전문병원 제도개선 추진
-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령 개정(법안소위 상정, '23.3~), 제도화 대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6.1)」,「시범사업 보완방안(12.15.)」 시행
- (의료법체계 개선 기반 마련) 선진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체계 연구회 구성·운영, 연구용역 추진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합리적인 반론에 신속하고 최선의 실증적 자료와 민주적 논의로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수행업무를 반영하기에 적절한지, 정책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 한지 등 검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4개의 핵심과제 중 전달체계 관련 추진 내용이 보이지 않음. 의료질 평가 관련 기존 추진 사항 외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손실보상을 벗어난 명실공히 의료질 평가 체계로의 전환 관련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의료현안협의체와의 논의의 횟수나 주제와 소주제의 적절성은 충실함. 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린 횟수가 2차례로 적은데, 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논의와의 차별성과 보완성을 충분히 정당화 하기 위한 장치로 역할하기엔 기록의 충실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 계획에 부합하는 설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인 반론에 대해 충실히 다루고 있는 증거가 미흡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전반적으로 충실성이 높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합리적인 반론에 신속하고 최선의 실증적 자료와 민주적 논의로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과 수행업무를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정책성과를 측정하기에 논리적 허점이 있어 부족함. 예컨대, 전문병원 지정은 수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문병원 개수만 늘리는 것이 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 질평가지표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진비 급여화 과정의 산물로서의 특진비 급여화 보상의 소극적 정당화 수준의 질 지표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야 함. 아울러, 질 평가는 항목개선뿐 아니라, 평가 단위를 기관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단위와 전국단위로의 질평가 지표를 새로이 수립하고 이를 매년 개선되는 정도를 추적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23

□ 주요성과

-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수급 지원을 통한 정책 토대 마련
-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 기반 추계 등 근거기반 인력정책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ㅇ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계, 국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 진행
- ㅇ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술기역량 함양을 위해 지원대상 및 과목 확대
- ㅇ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선진화 및 인프라 구축
- 직무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도입 직종 지속 확대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미래 수요 추계의 기존 추계방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보완하는 노력과 이를 추가 소통하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더욱 필요해보임
- (성과지표) 부서를 대표하는 지표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력자원의 구체적 파악과 관리 측면에 대한 지표를 보강할 것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필수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처할 만한 정책 의지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의견수렴 적절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조정과정의 합의와 이견에 대한 정리가 객관적으로 발견되지 않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미래 수요 추계의 기존 추계방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보완하는 노력과 이를 추가 소통하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불충분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성과라 하고 있으나 5개년 계획 미 발표, 인력지원전문기관(현재 공단)에 대한 청사진이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부서를 대표하는 지표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력자원의 구체적 파악과 관리 측면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강할 것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로 선택한 지표도 정책목표 달성을 보기에 미흡함. 예를 들면, 비수도권 (인턴)정원배정보다, 비수도권 (인턴뿐 아니라 전공의) 근무 하는 의사 수의 증가라는 개선이 더 중요한 성과이나 이를 측정하지 않고 배정단계까지만 측정하여 불충분한 정책목표 달성노력을 보이고 있음

24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 확대,
 면허재교부 요건 강화 등 위법행위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 (의료기사 인력관리)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지침 현행화 및 배포
- (병상수급 관리)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 마련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충실성) 미준수된 일정이 많음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 대처 관련 병상수급계획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추진일정 충실성) 추진일정이 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기술 필요
- (성과지표) 부서를 대표하는 지표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비 자원의 분포 및 동원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수립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함 -국제사회에서 가장 병상을 많이 보유한 과잉병상상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병상관리 정책이 돋보였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미준수된 일정이 많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 대처 관련 병상수급계획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를 과의 주요업무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재구성할 필요 -장비 자원의 분포 및 동원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25

□ 주요성과

- (환자안전 관리체계) ^①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공표('23.12.14.),
 ^②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 ^③실태파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환자안전 실태조사체계 구축('23.3~11.),
 ^④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2021.7월~, 5개소) 등
- (조정개시율 및 성공률 제고) 의료사고 조정과정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참여유도, 조정성공률 제고를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기준개선)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군 기준을 개선하여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군 등 확대 적용(중추신경계 입원기준 확대 적용)

- (추진일정 충실성) 지연되어 추진된 일정 등 존재하므로 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홍보 성과) 홍보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정비' 성과지표에서 지역환자 안전센터 성과교류 및 확산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감정 처리기간을 성과지표로 포함 하여 운영할 것으로 권고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연되어 추진된 일정 등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성과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대학병원의 역할이 이에 잘 조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의 유연한 운영이나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적합한 적극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지원방안 소통 등 지원한 노력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중 지역환자 안전센터 성과교류 및 확산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필요 -조정감정 처리기간을 성과지표로 포함하여 운영할 것으로 권고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 주요성과

-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기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 국제정세 불안정,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지속 우려**
- 복지부·식약처·의약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23.3월~), 11차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안 대응절차 마련(8월) 및 부족 의약품별 약가인하(5개품목), 균등배분(6건) 등 조치 시행
-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위한 유통환경 조성
-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기반 강화 판촉 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 불법 약국 조사, 면허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DUR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보완사항에 대한 서술 부족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및 검토가 필요해보임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DUR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보완사항에 대한 서술 필요
- (성과지표) 전문약사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능 모니터링과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고민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DUR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보완사항에 대한 언급이 부족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약물의 과다 중복 복용을 줄이기 위한 다부서-다기관 공동노력 (DUR 운영을 넘는 수준의 노력)들을 적극 운영하고 이를 활동성과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공공심야약국 등 야간 근무자의 위험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 운영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주기를 권고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공공심야약국 외에 다른 성과는 없었는지 의문
8.	성과지표 달성도	전문약사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능 모니터링과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고민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성과목표 외에도 좋은 성과를 이루었음

□ 주요성과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4.25.)
-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수립 및 발표(12.21.)
- 적정 규모의 간호인력 확보
-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하여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결정
- 체계적으로 교육·훈련된 간호인력 양성
-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추진
- (실태조사) 요양병원(400여개)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제공실태 분석(업무내용, 제공량, 시간 등), 제공인력 서비스 실태 파악('23)
- (서비스모형) 연구용역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모형* 개발('23.4~12,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 * △대상 환자 우선순위 △환자 선별방안,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 관리방안,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와 연계 방안 등

- (추진일정 충실성) 분기 내 미준수된 일정 존재하며, 추진일정 충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파악 및 평가를 지표에 도입할 것을 제안
- 교육전담간호사 정책의 효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미준수된 일정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간호인력의 지역사회 돌봄 등 전통적인 의료기관 외 역할에 관한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 조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파악 및 평가를 지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함, 교육전담간호사 정책의 효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별히 지적할만한 내용없이 전체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됨

28

[핵심]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수립·이행('23.2.), 지불제도 다변화, 병상 관리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수립('23.12)
-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를 위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상) 준비
- (지역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조정 악용 사례 발생 방지 및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 정산제도 시행(*23.11월)
- 외국인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요건에 국내 거주(6개월) 요건 도입**(「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2월)
- 경제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 등 **재정 변동성 심화**에도 수입확충·지출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등 검토 필요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을 단일 성과지표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이고 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과제와 성과지표간 불일치하는 것 같은 측면도 있음
-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수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해보임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핵심 주제를 도전적으로 접근했다고 높이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전문가 의견수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의 의견 수렴을 적절히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복지부 리더십이 직접 현장모니터링을 하는 등 현장 의견 청취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사업 초기부터 이뤄졌다고 평가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개선의 틀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고 평가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었음. 다만, 계획수립을 단일 성과지표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이고 사업의 궁극적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과제와 성과지표간 불일치하는 것 같은 측면도 있음-법정계획인 종합계획수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해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등 성과지표 외의 성과 달성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함

29

□ 주요성과

- 중중·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지원
- (공급부족) 전문·복합적 진료가 요구되나 발생빈도가 적은 고난도, 고위험 수술 및 중증응급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 (수요감소) 저출생 등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분만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연계협력) 심뇌혈관 신속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3.7월 건정심의결, '24.1분기)
- ㅇ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및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지원 강화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경감 및 진료체계 강화
- ㅇ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의 달성여부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개선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과지표는 계획의 추진율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관련한 지표로 선정해야 함
- (정책목표) 소아 진료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등 중요한 사업이 이뤄졌다고 평가되나, 성과지표 외 달성한 지표 역시 지침, 고시 시행 여부로 되어 있어 활동량에 대한 지표들임

평가지	莊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 정책분석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제도 개선이라는 시급하고 시의적절한 과제를 도전적으로 추진 하였다고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전문가 자문, 관련 협회 실무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음
3. 추진일정 충실성	관리의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 상황변화 적절성	터링 및 · 대응	코로나19 수가개선, 필수의료분야 지원강화 등에 관해 현장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6. 관련기관 노력도	반 협업	국회, 질병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7. 성과의 우수성	객관적	보건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경감 등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평가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공적으로 100% 달성됨. 다만, 급여확대 추진 8개 항목의 달성, 수가체계 개선 6개 항목의 달성 등, 사업의 달성여부만으로 측정 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성과지표는 계획의 추진율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관련한 지표로 선정해야 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소아 진료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등 중요한 사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함 -성과지표 외 달성한 지표 역시 지침, 고시 시행 여부로 되어 있어 활동량에 대한 지표들임

30

□ 주요성과

- (약제 접근성 개선)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약제 등재기간 단축
- (필수약 안정 공급)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23년도 30개 품목)
- (제도개선) R&D 투자 신약개발 선순환 등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유도 및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 안정 공급 지원
- (급여적정성 재평가) 임상 유용성 등이 미흡한 약제 재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가·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 결정
- (상한금액 재평가) '20.7월 개편된 제네릭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약제에 대해 기준요건 충족여부 상한금액 재평가 실시(2,979억원 절감)
-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약제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 도모('23년도 166개 품목 평균 4.4% 인하로 532억원 절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의견수렴)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 부족
- (성과지표) 성과지표 유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의견수렴)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 유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항목별 이행 여부를 카운트하고, 시범사업 진행 여부만으로 달성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보험약제 개선의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성과지표는 활동량보다는 활동을 통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선정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신약 건강보험 적용, 필수의약품 중단에 대한 대응 등 보험약제 관리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도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전년도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국회 협의, 복지부 내부 부서간 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약가개선, 희귀질환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하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평가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계획대로 달성됨. 다만, 항목별 이행 여부를 카운트하고, 시범사업 진행 여부만으로 달성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보험약제 개선의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성과지표는 활동량보다는 활동을 통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선정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필수의약품에의 접근성 강화가 이뤄졌다고 높이 평가함 -고가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잘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31

□ 주요성과

-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 부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 현지조사에 대한 공단·심평원의 업무지원 법적 근거* 신설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7항
-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등 국민 중심의 평가 강화
- 핵심지표 및 진료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 정비 등 평가 수행체계 효율화
- 평가결과를 활용한 가치기반 성과보상 확대
-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및 신뢰성 높은 평가자료의 적시 확보를 위한 적정 비용 보상('23년 747기관 4.7억원)

- (성과지표) 적정성 평가지표는 좋으나, 사후관리지표(현지조사, 자율점검 부당확인실적)는 재고할 필요
- (정책목표) 성과지표 외 목표한 성과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핵심지표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의적절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했다고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의료 현장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모니터링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함 -평가 프레임을 변화하려는 시도가 좋음.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식약처, 권익위, 법제처, 심평원 등 관련된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부당금액 환수, 행정처분 등 성과가 높이 달성되었으며 국민 만족도 향상 결과를 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적정성 평가지표는 좋으나, 사후관리지표(현지조사, 자율점검 부당 확인실적)는 재고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목표한 성과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핵심지표 중심 으로 선정할 필요

32

□ 주요성과

- 「필수의료 지원대책」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행점검
-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보완과제 발굴
- (소아) 중증·응급진료 강화, 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의료 공백 완화,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등 기존 대책 보완 발표
- (분만) 분만지역수가 도입 및 고위험분만 보상강화
- (지역)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위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 발표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상향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근거 마련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현안 논의** 및 **실손보험 구조 개편 등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 일차의료 시범사업 수가 등 개선방안 검토 지원으로 일차의료 강화 및 지속적 환자 관리 선순환 유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종류가 많으므로 핵심지표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
- (정책목표) 필수의료강화 기획과 실행 부서가 서로 다르므로 잘 협의하여 진행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사업을 도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전문가 단체 및 의료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평가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다양한 층위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 수립하고, 의료이용자 단체 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했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서울대병원, 교육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실행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 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다차원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대부분 성공적으로 달성 되었다고 평가함 -성과지표의 종류가 많으므로 핵심지표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필수의료강화 기획과 실행 부서가 서로 다르므로 잘 협의하여 진행할 필요

33

□ 주요성과

- MRI·초음파 등 급여 전환 항목 사후관리 강화
- 급여기준개선 협의체 운영으로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MRI·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추진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의학적 필요도 중심 급여 기준 개선, 기관 단위 심사 확대 등 면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선별급여 관리체계 정상화
- 환자안전 강화와 재정누수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정상화 추진, 평가 주기 도래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적시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CT, MRI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
- (성과지표)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검토 및 보완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CT, MRI 검사 외 다른 성과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좋겠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검토 및 보완 필요
- 적합성 평가 항목별 실시여부로 성과지표를 구성한 것을 확장하여, 내용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성과지표는 활동의 실적보다는 활동을 통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보장성 확대를 통한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주제를 도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다양한 의료전문가 기관 및 시민사회 대표조직과의 소통을 진행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다양한 병의원 방문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의료계, 지자체, 심평원 등과의 협업 진행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MRI,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 차단하고 의료비지출 절감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함 -CT, MRI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한대로 적합성 평가실시가 이뤄짐. 다만, 적합성 평가 항목별실시여부로 성과지표를 구성한 것을 확장하여, 내용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성과지표는 활동의 실적보다는 활동을 통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매우우수

(1) 평가결과

34

□ 주요성과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치료 전주기 지원 체계 혁신
-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체계 구축을 위한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6월)
- 예방·관리·치료 등 심뇌혈관질환 질병 전주기 지원 과제 추진을 위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발표(7.31)
-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진단부터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 발표('23.7)
- 중앙감염병원의 체계적 작동 및 임상·연구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23.8.)
 -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 감염병에 대한 자문기구인 감염병임상위원회 설치, 감염병관리시스템과 결핵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활용 근거 마련

- (추진일정 충실성) 일부 일정이 분기 내 미준수되었으며 추진 일정 충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암생존자에 대한 전주기에 걸친 의료적 관리와 지역적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향후 과제목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일부 일정 미준수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심뇌혈관 응급치료 체계 공백의 긴박한 사회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대응하였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 임상학회 등 다양한 협력필요 기관과의 성실한 노력이 잘 나타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됨 -암생존자에 대한 전주기에 걸친 의료적 관리와 지역적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향후 과제목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35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 신·증축 지원 국고보조율 개선 (기존 50%→60%)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지역거점의료기관 등의 인프라 대폭 확충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등) 국가 공공의료 총괄기관 역할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28)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인력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61명('22) → 69명('23))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확대(60명('22) → 90명('23)) 등 인력 확충 추진
- (국립대학병원 이관 및 혁신)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 이관 추진*(교육부→보건복지부, 10월~)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등 4개 법 개정안 발의('23.12.13), 교육위 개최시 심의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소통) 공공의료기관의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내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소통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검토 필요

- (소통) 공공의료기관의 유연한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내 미충족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지역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외 상급종합병원간의 효과적 연결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구성 등 새로운 방식의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소통을 펼쳐야 함
- (성과지표) 과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에 대한 활용과 민간병원의 공공역할 유도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지표 도입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차의료 관점에서 완결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공공의료기관의 유연한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내 미충족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지역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외 상급종합 병원간의 효과적 연결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구성 등 새로운 방식의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소통을 펼쳐야 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023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차기 연도부터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을 높일 것을 권고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장기적인 과소투자로 당해 연도 개선을 이루기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여러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어, 부족함을 상쇄할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서 얻을 결과로 볼 수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작성될 필요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에 대한 활용과 민간병원의 공공역할 유도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지표 도입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지역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상을 이루어냈음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36

□ 주요성과

- (응급의료체계 개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응급의료 이송* 및 전달체계 개편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추진
 - * 수용곤란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지역별 이송지침 수립 연구, 이송·전원의 지휘·관제를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
 - **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이용 제한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및 자가분류앱 개발 착수('23.12월)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응급 의료기관 확충 등 인프라 지원,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관련 정책 연구 추진
- (전문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아 및 중증외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센터 지원 강화 및 지정 확대
-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2개소 (서울(국립중앙의료원), 경남(경상대병원)) 추가 지정

- (추진일정 충실성) 일부 일정이 분기 내 미준수되었으며, 추진 일정 충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과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일부 일정 미준수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 운영 병의원 확대 및 야간 근무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 운영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주기를 권고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 주요성과

-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 재난의료 시스템 체계화
- 복지부 중심의 상시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체계 구축
- 중앙-지역으로 이어지는 재난의료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안정적 **DMAT 인력 및 신속한 출동기반 확보**를 위하여 **DMAT 출동수당 인상**('23) 및 **대기수당 신설**('24 예산안 반영), **단체보험** 가입('23.11월)
-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추진
- 구급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로 연계되도록 **병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에 상응하는 구급현장(병원 전) 기준 개발('24년 시행)
- 전용헬기·전담구급차 확충 및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 역량 강화 등 현장 이송 인프라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충실성) 일정지연^{*}이 다소 있었음
 - * 단, 협의 과정의 충실한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더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

- (추진일정 충실성) 분기 내 일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일정지연이 다소 있었으나, 협의 과정의 충실한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더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과밀시작조짐(통신연결실패빈도 증가, CCTV상의 사람의 밀도 증가), 홍수나 산사태 고온 등 발생의 조기 정보 취득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과 제안을 진행하고, 이를 활동의 목표에 추가하는 것을 통해 준비 수준 향상이 더 진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신설과임에도 대체적으로 무난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38

□ 주요성과

- 생명윤리 정책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체계 구축
- DRB 심의 통과시 7일 이내에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 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 추진('23.7월~)
- ㅇ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도 기반 강화
- 배아 및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추진
- 유전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추진
- ㅇ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급속한 증가로,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213만 명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충실성) 지연된 일정^{*} 존재
 - * 단,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추진일정 충실성) 분기 내 일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성과목표치가 수요대비 공급의 미흡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응급검사가 아니므로 기관 수보다는 검사 수요대비 처리 역량으로 지표를 변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일정 지연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기관 내 협업이 잘 이루어졌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성과목표치가 수요대비 공급의 미흡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응급검사가 아니므로 기관 수 보다는 검사 수요대비 처리 역량으로 지표를 변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39

□ 주요성과

- 혈액관리 국가 책임성 강화 마련 및 안전한 혈액수급 관리
- 헌혈부터 수혈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관리를 위한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및 '23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혈액관리법령 개정*으로 혈액분야 국가 관리 체계 강화
 - * (시행령 개정) 국가의 원료혈장 수급관리 근거 마련, 헌혈자 예우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고시 제정)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 기격 및 배분 산정 기준, 결정 체계 포함
- ㅇ 효율적인 장기기증 관리체계 구축
-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등 기증 방식 확대로 불균형 해소 및 기증 활성화 추진
- ㅇ 제대혈 기증 활성화 및 인식 개선
- 기증 제대혈에 대한 국가적 관리 강화 및 적정 제대혈 보관량 산출 연구용역 실시('23.7~11.) 실시

- (의견수렴 적절성) 장기제공의사에 대해 opt-in 방식이 아닌 opt-out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가치 판단 주기적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해보길 권고함
- (성과지표) 장기이식환자들의 코호트 관리를 통해 이식환자들의 건강관리에 고려할 새로운 요소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향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차기 성과 목표에 추가할지 검토해보길 권고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장기제공의사에 대해 opt-in 방식이 아닌 opt-out방식을 사용할수 있을지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가치 판단 주기적 조사 필요성에대한 자체 검토해보길 권고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장기이식환자들의 코호트 관리를 통해 이식환자들의 건강관리에 고려할 새로운 요소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향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차기 성과목표에 추가할지 검토 해보길 권고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 주요성과

- 금연환경 조성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복지부·식약처 공동)'을 제정(국정과제 68-3)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알 권리 실현('23.10.31. 공포)
-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3.8.16. 공포)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 *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10→30m),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30m)
- 생애주기 국가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 영유아 건강검진 시 **정서·사회성 교육을 강화**(기존 2회→4회 확대)하고,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검진결과, 모든 '심화평가 권고' 아동)
- 절주환경 조성으로 음주율 감소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안」발표('23.11.30.) 등을 통한 통신매체 內 무분별한 음주장면 송출 문제 제기, 자율규제 독려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가 보수적이며 측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부족
- (정책목표) 예방적 건강관리의 통합적 전략 마련 필요하나 현재는 금연, 절주, 비만, 검진 등으로 분절적임

- (성과지표) 대국민 금연광고 캠페인 인지도, 국가건강검진 제도개선 이행률이 계획대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함. 측정방법 및 구성 등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그리고 보수적인 성과지표 목표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예방적 건강관리의 통합적 전략 마련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만성질관 예방, 관리, 건강위해요인 규제강화, 국민 건강수명 향상 등의 중요한 과제를 도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사업목표 설정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소통하였다고 평가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외부 요인에 의한 미준수 일정이 있으나 외부요인임을 고려하여 평가함
4.	정책소통 충실성	국민건강행동이라는 주제상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높이 평가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해 많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이뤄졌음. -법률 제정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 노력이 돋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흡연율 감소, 연속적인 캠페인 운영으로 홍보상 수상 등 성과가 우수하게 이뤄졌음. 이러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설명이 보다 상세히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8.	성과지표 달성도	-대국민 금연광고 캠페인 인지도, 국가건강검진 제도개선 이행률이 계획대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함. 측정방법 및 구성 등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성과지표의 목표량을 보수적으로 설정
9.	정책목표 달성도	예방적 건강관리의 통합적 전략 마련 필요함. 현재는 금연, 절주, 비만, 검진 등으로 분절적임

41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환경 및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 지역 정책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효율적 보건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全지자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3~'26) **수립**(4월)
-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강화
- 소생활권 기반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추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 수요자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주된 강조점을 두어, 국가 수준의 건강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 필요
- 달성 및 거의달성 수준으로 성공적 진행되었음. 다만,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성과를 객관적이고 내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성과지표가 변화 지향적이기보다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지표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지자체의 책무성과 권한이 증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책 기획을 위한 연구와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주된 강조점을 두어, 국가 수준의 건강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함
2.	의견수렴 적절성	포럼, 간담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였다고 평가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시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 등 지역의 여건을 알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기업 간담회, 기업실무자 워크숍 등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행안부, LH, 보건소, 권익위, 통계청 등과 폭넓게 협업하였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함
8.	성과지표 달성도	-달성 및 거의달성 수준으로 성공적 진행되었음. 다만,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성과를 객관적이고 내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성과지표가 변화 지향적이기보다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지표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목표한 성과와 그 달성 수준이 모호함

42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내실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계획 및 건정심 보고사항('22.11월) 이행을 위한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모형(안) 마련
-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본사업모형(안) 확정 후 개선사항 및 추진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23.8월)
- 본사업 전환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업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사업 6개월 운영('23.12월~)
-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23.7, 12월)
- (1차 개선)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모형 확정 및 지침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개선내용>

- ◆ (사업 모형 단순화) 6개 유형 → 2개 유형(예방형, 관리형)으로 통합
- ◆ (포인트 제도 개선) 적립기준 및 사용기준 완화, 사용처 확대*
 - * 사용처 확대는 시스템 조치 완료 후 '24.7월 시행 예정
- ◈ (사용자 접근성 제고) 모바일앱 개선, 사업 홍보
- (2차 개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과 동일하게 관리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을 109개로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 의료기관 수를 성과 목표로 삼아 달성되었음. 다만, 우수한 다른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도 객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성과지표의 목표량 설정이 다소 보수적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만성질환관리의 일차의료기관 제공 등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건강생활실천 등의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를 도전적으로 접근 하였다고 평가함
2.	의견수렴 적절성	관련 전문가 및 환자, 의료이용자 단체까지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기관 수준에서는 보건소와 공단, 개인적 수준에서는 관련 의료전문가 및 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졌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험공단, 심평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진행되었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위해 산림청과의 협업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매우 참신한 기획이었으며, 조폐공사와의업무협약도 창의적이라 평가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함 -만성질환관리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 의료기관 수를 성과 목표로 삼아 달성되었음. 다만, 우수한 다른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도 객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성과지표의 목표량 설정이 다소 보수적
9.	정책목표 달성도	본 사업시 유사사업과의 원활한 통합과 지역보건의료체계(공중보건+일차의료)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43

□ 주요성과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국내 유일의 **치의학 연구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연구용역 추진
- 중장기 계획의 **과제별 법령·제도 보완** 및 **연구개발 필요사항** 등에 대한 연구 추진
- 공공 구강정책의 활성화 및 근거기반 구강정책 기반 마련
-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 치과병원 관리지침」개정·배포(4월)
-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구강 관리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연중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를 통해 참여아동 14.8% 증가(('22) 4,472명→('23) 5,136명)
-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습관 및 실천 향상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홍보 강화로 국민의 예방실천율 향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충실성)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체계적 분석 부족
- (성과지표) 미달성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ㅇ (정책분석 충실성)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 (성과지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지자체별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기반 강화라는 시의적절하고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주제를 도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함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근간이 되는 연구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함. 구강의료 이용자, 즉 본 사업의 대상으로 과제목표에서 언급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수요를 직접 파악하는 것도 향후 사업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치과계와의 소통을 잘 구축하였으며, 진료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잘 이뤄졌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이끌어 냈으며, 교육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진행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 향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추진 등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되었다고 평가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아동 치아 홈메우기 이용, 성인 스케일링 이용,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거의 달성) 등 대부분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지자체별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구강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센터 등 독립적 기구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치과의료체계를 변화하는 정책도 필요

44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 의료서비스 선진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마련) 정신질환의 전주기 지원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12.5),
 역대 최초로 정신건강정책을 국가 아젠다화
- (입원제도 개선 추진) 일부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
- 회복 지향의 복지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
- 주거, 일자리, 시설 환경 및 (비자의)입원 등 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쉼터(예: 동료지원쉼터) 지원 근거 마련 등
- 더딘 확충(신축) 속도 보완을 하며 지역 내 재활자원의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활용도 제고) 마련
-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96년 정신보건법 제정·시행된 이후 최초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21.3.5)·시행으로 치료환경 개선
 - ※ 병상개념, 이격거리 기준 없음(~'21.2) → ('23.1.1~) 입원실 병상 수 최대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1m 이상), 300병상 이상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등

- (성과지표) 업무에서 중심으로 둔 사업과 성과지표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함. 성과지표가 주로 활동량에 대한 지표여서 활동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시설, 환자치료에 정책적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 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돌봄적 접근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범정부적 사업으로 주목받는 정신건강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도전적 사업을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하였음.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대폭 사업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정신건강과 연결되는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과 소통하여 진행 되었다고 평가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다양한 정신건강계의 전문가, 이용자, 및 기관과의 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교육부, 고용부를 포함한 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며,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실제적 협력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함 -자살예방, 치매관리정책, 산업보건(감정노동 등)과 함께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와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하기를 고려해보길 바람(외로움이나 고독사 등과의 연결)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범국가적 정신건강정책 마련을 위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등 성과가 크다고 평가함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심사를 한 단계 높였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정신건강서비스 수혜자 수 달성되었고, 전문요원 제도개선, 시설 개선방안 공표 등도 계획대로 달성되었음 -업무에서 중심으로 둔 사업과 성과지표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함. 성과지표가 주로 활동량에 대한 지표여서 활동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함 -시설, 환자치료에 정책적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방-치료-일상 회복의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돌봄적 접근 필요

45

□ 주요성과

-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신건강검진 확대 시행방안 마련 및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른 타당성(비용-효과) 분석 연구 등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확대에 따라 신규 전문인력 500여명 확충 및 지자체 배분
- (재난 심리지원 역량 강화) 대국민 재난 심리지원 지속 추진 및 재난 심리지원 인력 대상 교육·훈련 실시 등 심리지원 역량강화 추진
- (중독치료 인프라·인력 확충) 마약류 등 중독치료 인프라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중독치료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
- (마약중독 치료제도 개선) 오늘날 마약류 중독치료 현실에 맞추고, 치료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및 법령개정, 시범사업 등 실시

- (홍보 성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자살예방, 치매관리정책, 산업보건(감정노동 등)과 함께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와의 소통을 상시적 으로 하기를 고려해보기 바람(외로움이나 고독사 등과의 연결)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활동량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활동을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대, 재난 심리지원 체계강화,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강화 등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지난 일년간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광역단위 실무자 간담회, 마약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전문적 의견 수렴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예상되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중독전문병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관 현장방문 등 리더십의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져 현장의 의견 모니터링 및 격려가 잘 이뤄 졌다고 평가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 건강적 지원 대응이 적절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마약류 대책을 위해 범정부적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구성되었으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위해 부처내부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자살예방, 치매관리정책, 산업보건(감정노동 등)과 함께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와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하기를 고려해보기 바람(외로움이나 고독사 등과의 연결)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우수사례 수상 및 우수부서 선정 등 성과를 나타내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재난심리 지원인력 교육훈련,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 등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 -성과지표가 활동량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활동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46

□ 주요성과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 및 추진
-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게 국민의 자살행동·인식,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3 자살실태조사 실시("23.5~12월)
- 경찰청 변사자 정보를 활용한 통계 분석, 지역 보고서 배포를 통해 **지자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수립·추진**
-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개최(9.4.), **모니터링단 운영**('19~'23.6. 누적 약 60만건 신고, 약 19만건 삭제) 등을 통한 자살유발·유해정보 차단 추진
- 자살예방 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개발로 범부처, 범국민, 종교계(7대 종단) 합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23.3월~)
-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을 긴급성을 담은 특수번호 '109'로 통합·개편 추진(24.1.개통 예정) 및 SNS 등 상담 채널 확대 방안 마련

- (과제의 적절성) 과제와 성과지표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과제명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과제명으로 바꿀 필요
- (성과지표)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이라는 과제가 모호하며, 제시한 성과지표는 이와는 거리가 있음
- (정책목표) 주로 자살예방정책이 고위험군, 시도자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다 사회학적, 인구학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자살률 감소, 자살 위험요인 감소 등의 매우 시급하며 어려운 과제를 도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어느 때보다 자살예방관련 정책적 노력이 돋보임 -과제와 성과지표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과제명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과제명으로 바꿀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폭넓게 이뤄졌다고 높이 평가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자살관련 조직 및 기관에 광범위하게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자살예방 정책 아젠다를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정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행안부 평가, 한국PR 대상 등에서 자살예방사업의 우수성을 평가받았음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노력이 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동의율 등이 목표 달성하였음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이라는 과제가 모호하며, 제시한 성과지표는 이와는 거리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건수, 자살예방교육 이수건수 등 전반적인 성과가 성공적으로 진행됨 -주로 자살예방정책이 고위험군, 시도자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다 사회학적, 인구학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주요성과

- 정부 및 지자체 돌봄사업 유형별 모니터링 실시, 건강돌봄 시범 사업별 한의약 사업 역할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후행 진료** 및 **협의진료**의 **급여 적용 근거 창출** 및 **수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16.7~)
-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3단계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하여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행(75개 기관, '22.4월~)
-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한약의 품질·안전성 향상 추진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심의·논의(2회 실시, 4.11~4.18(서면), 12.8.)
- 한방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6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충실성) 첩약 건강보험,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원인 분석 필요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책분석 충실성) 첩약 건강보험,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원인 분석 필요
- (성과지표)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개선도를 임상연구실적과 만족도를 합산해서 평가하였는데, 보다 정교화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한의학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고난이도의 사업을 도전적으로 진행하였음 -첩약 건강보험,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원인 분석이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모니터링 및 간담회 통해 현장 모니터링 진행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한의약 관련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을 진행하였고, WHO 전통의약총회참석 등의 협력을 진행하였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수상하는 등의 업적 -사업대상 참여자의 만족도는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음.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개선도를 임상연구실적과 만족도를 합산해서 평가하였는데, 보다 정교화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9.	정책목표 달성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와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48

□ 주요성과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한의약 R&D를 통해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 및 한의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총 6개 질환(산후풍, 소아 식욕부진, 금연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개발
- (한의약 과학적 근거 마련)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유효성· 안전성 등 비교효과 연구) 및 한-양약 약물상호작용 연구 등 통해 한의약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한의약산업 기반구축) 한의약산업의 영세성 등 구조적 한계를 전주기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화 기반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충실성)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의 구체적 지향점이 무엇인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성과지표) 목표설정 근거 부족 등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 필요

- (정책분석 충실성)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의 구체적 지향점이 무엇인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한의약 산업 육성에서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원인분석이 필요함
- (성과지표) 목표설정 근거 제시 및 성과지표의 유형 검토 필요
- 목표설정의 근거가 함께 제시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성과지표가 활동량을 측정하는 지표이어서 제한적임. 활동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한의약 과학화, 표준화 및 산업화라는 고난이도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의 구체적 지향점이 무엇인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한의약 산업 육성에서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원인분석이 필요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한의약 관련 협의체 및 간담회 통해 현장 모니터링 진행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한의약 산업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진행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한의약 R&D 표준진료지침 개발 건수, 산업화 기술지원, 온라인 교육 등의 성과지표가 대체로 달성되었음. 목표설정의 근거가 함께 제시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성과지표가 활동량을 측정하는 지표이어서 제한적임. 활동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도가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의과학과 차별화되는 한의약 산업의 장점을 부각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방향 설정)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②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 내용>

- ▶ (방향) (기존)삶의 질 제고 → (명확화)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 (4대 추진전략) ▲ 선택집중, ▲ 사각지대·격차 해소, ▲ 구조개혁·인식개선, ▲ 추진기반 강화
- ▶ (5대 핵심분야) ¹⁾돌봄·교육, ²⁾일·가정양립, ³⁾주거지원, ⁴⁾양육비용 지원, ⁵⁾난임·건강
-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정착유도
-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청년정책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와 양육비용 경감 위한 종합적 대책 협의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족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와 양육비용 경감 위한 종합적 대책 협의 필요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 목표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목표 달성여부 자체와 그 의미를 평가하기 어려움
- 목표치 설정이 낮은 편임
- 홍보캠페인 효과성 측정의 표본대상이 저출산대책의 정책수요자일 때 의미있는 성과지표임. 현재는 효과성 측정 표본대상(홍보캠페인을 1회라도 보기만 하면 되는가?)이 모호함. 또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결과의 비교가 필요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진단 및 분석실시
2.	의견수렴 적절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적극적 의견수렴 실시. 성과지표 개선 및 추가지표 개발 등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 환류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소통 및 이에 대한 평가(홍보의 목적 달성도)가 곧 성과지표인 과의 특성상 홍보 성과를 보다 세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정책대상별 정책메세지 생성뿐 아니라 효과적인 소통채널 등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을 우수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며, 난이도 높은 당청 및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조정 성과 우수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와 양육비용 경감 위한 종합적 대책 협의 필요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남성육아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해외언론의 관심은 의미있는 성과라 판단됨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며, 기사보도를 인용한 정성적인 근거만 제시되고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대국민 홍보의 결과에 따른 캠페인 효과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나 64.7이라는 목표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목표 달성여부 자체와 그 의미를 평가하기 어려움 -목표치 설정이 낮은 편임. 정부의 실질적 정책지원으로 출산하기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홍보하여 인식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해보임 -홍보캠페인 효과성 측정의 표본대상이 저출산대책의 정책수요자일때 의미있는 성과지표임. 현재는 효과성 측정 표본대상(홍보캠페인을 1회라도 보기만 하면 되는가?)이 모호함. 또한 효과성을 측정하기위해서는 사전, 사후 결과의 비교가 필요함
9.	정책목표 달성도	기대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획기적 방안 제시 필요

보통

(1) 평가결과

50

□ 주요성과

- (인프라 확충) '23.9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누적 981개소
 (신규 100개소)를 확충, 2.3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운영 내실화) 돌봄 제공시간 연장, 개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강화 및 운영 기준 변경
- (서비스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평가 시 아동학대 사례 반영 및 이용자 만족도 개편을 통한 센터별 서비스 질 관리 유도
- (공공성 강화) 개인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시설로 전환, 회계투명성 및 운영효율성 제고 유도
- (연계 강화) 초등돌봄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코로나19로
 위축된 아동의 문화체험 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100%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목표치가 높아 향후 만족도 증가가 부서의 노력을 반영하기는 어려워 성과지표의 재검토 필요
-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책정되는 목표와 여기에 미세한 차이로 달성 정도가 평가되는 것이 대표성과인지 고민 필요함. 개선사항 및 개별센터의 점수를 도출하도록 개선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의미있는 성과지표(돌봄공백 해소 정도/ 센터별 향상도 등) 개발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적절하고 정책분석도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의 반영내용까지 충실히 기술. 환류노력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을 다양하게 매우 우수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초등돌봄이 주요정책과제로 부상하여 다양한 직급과 부처에서의 아동돌봄 현장방문 적극 지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정책효율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보다는 과제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음 (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필요)
8.	성과지표 달성도	-100%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목표치가 높아 향후 만족도 1~5% 증가가 부서의 노력을 반영하기는 어려워 성과지표의 재검토 필요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추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책정되는 목표와 여기에 미세한 차이로 달성 정도가 평가되는 것이 대표성과인지 고민 필요함. 개선사항 및 개별센터의 점수를 도출하도록 개선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의미있는 성과지표(돌봄공백 해소 정도/ 센터별 향상도등) 개발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돌봄공백을 양적(예: 시간연장), 질적(예: 아동자치회 운영) 개선에 기여

51

□ 주요성과

- (첫만남이용권) '23년 출생아 23.3만명에게 보편적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사고 책임 보험 보장한도 상향(사망: 현행1억원→개선1.5억원, 사고: 현행2천만원→ 개선3천만원)으로 이용자 권리 증진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상담센터 2개소 추가(중앙 1, 권역 7개소), 상담(유선·대면·방문·온라인),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도입·확대('23년 20개 지자체 추가, 총59개)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이용자 만족도는 기초선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점수를 목표치로 하기보다는 90점 이상을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관리, 공공성 등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다른 성과지표를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적절하고 정책분석도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환류노력은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 매우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을 우수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출생통보제 법안 신속 대응 돋보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당정협의 2회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과 노력을 보여줌 -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다수의 정책 추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적극행정 수상
8.	성과지표 달성도	-이용자 만족도는 기초선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점수를 목표치로 하기보다는 90점 이상을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관리, 공공성 등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다른 성과지표를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음 -목표치가 전년실적 대비 낮게 설정된 지표가 있으나 미숙아 생존율 등은 국제기준 고려했음을 감안하였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성과 지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함 -성과지표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52

□ 주요성과

- 입양절차 전반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25.8월~)
-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시행)을 통한 아동의 생명권·발달권 보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23.10.31. 시행 '24.7.19.) 및 예산 확보(52억원) 등 정책 기반 마련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결과분석 및 아동 권리포럼 등을 통한 아동 권리 증진 및 인식 제고 추진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 '23.4.13.)를 통해 **'윤석열정부 아동 정책 추진방안' 마련**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일반·빈곤 아동 가구(5,500가구) 대상 '**아동종합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하여 아동 생활환경·발달·건강상태 등 **정책개발 기반 마련**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과지표가 타부서에서 수행한 공적책임강화와 아동권리보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궁극적 성과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부서가 수행한 성과에 비해 협의의 지표로 보임. 법률개정, 도입 등이 보다 핵심적인 성과임에도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움. 향후에는 입양체계 개선,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23년에 도입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적 책임 강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항인 성과지표 개선방안으로 영향평가 참여 지자체 수를 단순하게 넣은 것은 장기적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적절하고 정책분석도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지적사항인 성과지표 개선방안으로 영향평가 참여 지자체 수를 단순하게 넣은 것은 장기적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보호출산제에 대한 적극적 정책홍보로 긍정여론 형성 돋보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을 우수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아동수당 규제개선 민생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타부서에서 수행한 공적책임강화와 아동권리보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궁극적 성과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부서가 수행한 성과에 비해 협의의 지표로 보임. 법률개정, 도입 등이 보다 핵심적인 성과임에도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움. 향후에는 입양체계 개선,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23년에 도입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적 책임 강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인 성과지표 개선방안으로 영향평가 참여 지자체 수를 단순하게 넣은 것은 장기적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음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차체 참여 촉진 위해 정부포상 신설 등 적극 노력
9.	정책목표 달성도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이 위기아동 보호에 지속적으로 기여 가능

53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소득지원 확대) 자립수당 지급금액 인상('22. 월 30만원 → '23. 40만원), 자립정착금 인상 권고('22. 800만원 → '23. 1,000만원)
- (의료지원 신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23.12월)
-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 조기종료된 아동의 자립준비·지원 내실화
- (자립준비 내실화) 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일 때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편, 자립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제도 개선) 보호연장아동이 기숙사 등 양육시설 밖 거주 시해당 기간동안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23.1월~)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드러나게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존 정책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기술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명칭이 부정확하여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 중 기능 향상 기여도는 사전 사후 점수 대비로 수정 필요
- (정책목표) 가정형 보호강화 및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적이 거의 없고, 성과지표나 정책목표 달성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정형 보호 강화지표로 타당한지 재고가 필요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드러나게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위적 필요성과 실적만 기술하고 있음. 기존정책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보다 핵심적 이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기술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 내용의 정책반영이 충실히 기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공백 피해 없도록 적극 행정 실시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디딤씨앗통장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8.	성과지표 달성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의 명칭이 부정확하여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 중 기능향상 기여도는 사전 사후 점수 대비로 수정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가정형 보호강화 및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적이 거의 없고, 성과지표나 정책목표 달성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정형 보호 강화지표로 타당한지 재고가 필요함. 가정형 보호의 질을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친인척/조부모 위탁보호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일반 비혈연 위탁부모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54

□ 주요성과

-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조사실시
- (고위험 아동에 대한 점검) ^①장기(7일이상) 미인정결석 아동 대상 전수조사 실시(복지부·교육부·경찰청 합동), 학대피해 의심아동 대상으로 보호조치·서비스 연계('23.3~4월)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 (가족회복 및 재학대 예방) 가족기능 회복, 재학대 방지를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확대 시행(43개 기관, 1,000→1,200가정)
- (의료지원체계 정립) 시·도 단위의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확대 지정 ('22. 8개소 → '23. 15개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 정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부서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부의 평가보다는 주요 실적위주로 기술되어 있음
- (성과지표) 목표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족 등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의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외부의 평가 기술 필요
- (성과지표) 신규지표 목표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발굴아동 서비스 연계율 지표의 경우, 지난 4년간 실적값의 변동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적절하고 정책분석도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현장의 의견수렴 후 연중 수시로 지침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방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수시로 바뀌는 지침은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음. 즉각적인 지침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시보완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장의견에 대한 전문적 검토,정기평가와 환류를 통해 신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영아사망사건으로 위기정보 해당 아동 전수조사 등 적극 행정 실시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 부처와 협업 노력을 많이 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부서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부의 평가보 다는 주요 실적위주로 기술되어 있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신규지표 목표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위기발굴아동 서비스 연계율 지표의 경우, 지난 4년간 실적값의 변동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실적값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가 정책 성패의 결정요인일 가능성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부서의 많은 노력이 투입된 것은 평가할 만함. 다만, 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제시한 기대효과는 불확실함

55

□ 주요성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 55만명에게 보건·영양·위생교육, 운동지원, 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취약계층 23만여가구의 응급상황 신속 대응 등
- (노인학대 등 보호체계)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업무 방해시 과태료부과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23.12.14.시행)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위한 지역 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23.7~'25.12)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며, 사업 실적의 증가를 직접적인 홍보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 (성과지표) 성과지표 수준이 평이하며 목표치의 도전성은 낮음.
 또한, 예방적, 통합적 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은 계획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24년도 성과관리에서 목표치 설정에 고려 해야 할 것을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상위 과제와의 연관성이나 시의성은 높은 편임. 개별 과제별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상황이나 문제점 파악하여 우수하나, 이러한 정책분석 결과를 과제와 어떻게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시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으나 난이도가 높은 일정은 아님
4.	정책소통 충실성	-일반인 인지도 향상 등 홍보성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부족함 -홍보를 통해 앱다운 건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실적의 증가를 직접적인 홍보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정책집행현장에서의 현장방문, 공청회 등 모니터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여건상황변화에 대해 적시성있게 대처하였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 부처 내부와의 협력, 회의 등 진행도 매우 우수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수준이 평이함(목표치의 도전성은 낮음) -예방적, 통합적 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은 계획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24년도 성과관리에서 목표치 설정에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응급안전서비스장비 오작동률 감소 등의 성과지표를 추가로 실시한 점은 의미있게 평가함 '노인/장애인 자립,재활,돌봄 R&D' 예타 추진 및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R&D는 초고령사회 돌봄인력부족문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분야(AgeTech)로, 예타보고서 준비를 위한 많은 노력은 의미있게 판단됨

56

□ 주요성과

-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사회서비스형(1.5만개), 민간형 일자리(2.3만개) 등 일자리 3.8만개 신규 확대 및 신규 일자리 발굴 등 내실화 추진
- (복지 사각지대 지원)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23.6~11월)' 최초 실시하여 현황, 복지 욕구 등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12월 말)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장사시설 수급관리, 장사문화 개선 등 향후 5개년간 중점 추진과제 발굴(1.6. 발표)
- (화장수요 대응) 화장수요 집중시기 선제 대응 및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 화장정보 비상운영 관리체계 구축
- (재난대응) 집중 호우·폭염 등 재난 상황 대비 근무중단 등 탄력적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참여 어르신의 소득 공백 최소화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부족함
-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이 낮은 것이 한계이며, 시니어인턴십 계속 고용률 지표의 경우 3년 내내 100%로 달성인데, 이를 성과 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성 높지 않음. 공설장사시설 설치예산 실집행율이 적절한 성과지표라고 판단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효과적인 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도전성이 높게 요구되며, 상위 과제와의 연관성이나 시의성도 높은 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참여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수요 분석 등이 요구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유관단체, 지자체, 현장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등 다수 실시 자체평가위원 지적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부족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지역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우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일자리 사업등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융통적으로 대처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보건복지부 및 산하공공기관) 수상, 고용부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에서 직접일자리 부분 '양호'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의 도전성이 낮은 것이 한계, 지표의 사업 대표성은 적절한 편, 지표성격은 대부분 투입지표 성격. 시니어인턴십 계속 고용률 지표의 경우 3년 내내 100%로 달성인데, 이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성 높지 않음. 공설장사시설 설치예산 실집행율이 적절한 성과지표라고 판단함 -현재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외 목표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효과성에 대한 외부평가(언론 등)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하여 우수한 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의 법적근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음.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23.6~11월)' 최초 실시하여 현황, 복지 욕구 등 파악 및 지원대책을 발표한 성과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함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57

□ 주요성과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3~'27)」 발표) 재가서비스 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세부 과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8.17.)하고 충실한 이행 추진
-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노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한 번에 판정하여 적정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판정체계시범사업 실시('23.3월~) 등
- (서비스 다양화 및 보장성 개선) ▲통합재가서비스 확산(참여기관 31→75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도입('23.9월~) 등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추진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운영센터 확대(65→227개)

- (홍보 성과)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도, 이해를 홍보의 성과와 연결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주어야 함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기관의 우수 등의 평가는 없었음.
 성과지표가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이므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를 제언함
- (성과지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적 발전차원에서 의미있는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비전과 로드맵을 반영한 핵심성과지표(KPI)로 타겟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지표를 유지할 경우, 초과달성한 지표 중 목표치를 많이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24년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의 중요성, 시의성 등 높은 편이며 난이도도 중상 이상임. 개별 과제별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상황이나 문제점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분석 결과를 과제와 어떻게 연관시켰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위원회, 간담회, 포럼,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수 실시. 자체평가위원 지적사항 대부분 반영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연된 일정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활동 수준 높은 편이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도, 이해를 홍보의 성과와 연결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주어야 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지역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다수 이루어짐 재해,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우수, 고령화 선대응을 위한 노력 등 우수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기관의 우수 등의 평가는 없었음. 성과지표가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이므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를 제언함
8.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수준 적극성의 초과달성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적 발전차원에서 의미있는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비전과 로드맵을 반영한 핵심성과지표 (KPI)로 타겟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지표를 유지할 경우, 초과 달성한 지표 중 목표치를 많이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24년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재가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은 의미있는 노력과 성과로 평가함.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발표와 함께 재택의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 서비스다양화 및 실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58

□ 주요성과

-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진입-퇴출 관리 강화) 지정심사 기준을 지속 보완·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없는 영리 목적의 시설 설치 제한
- (미운영기관 정비)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확인 및 정비를 통해 수급자 대상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정의 갱신('25.12.12.) 도래에 따른 효율적 기관관리 방안 마련(5~10월)
-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대 및 간호서비스 강화
- (공립 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 (전문요양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내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본 사업 도입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업무 대표성이 낮은 편(4개 핵심과제별 성과관리 이루어지지 못함)
- (정책목표) 향후 정책 기대효과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평가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하는 부분은 미비함

- (성과지표) 업무 대표성을 높일만한 성과지표로 검토 필요
- 업무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 (정책목표) 외부평가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서술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의 중요성, 시의성 등 높은 편이며 난이도도 중상 이상
2.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도 증가 성과와 직접 연결시킨 점이 상당히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핵심 과제 4개에 대해서 지역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각각 다수 이루어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법무부, 지자체, 식약처 등과 협의 진행 부처 내부와의 협력, 회의 등 진행하여 사업 운영 원활화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국조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보통, 달성도는 달성,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 대표성이 낮은 편(4개 핵심과제별 성과관리 이루어지지 못함)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실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예·결산 보고 시군구 승인율인 성과지표가 목표대로 달성되었음. 업무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향후 정책 기대효과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평가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하는 부분은 미비함

59

□ 주요성과

- (치매관리 내실화) 치매안심센터(본소 256개, 분소 241개)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에게 체계적인 예방-돌봄-치료 서비스 연계·제공 강화
- (치매정보 연계 강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보공단 등 치매환자 관련 정보 연계로 촘촘한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강화)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추진(7~12월) 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방식 체계화 및 초기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 전문의료) 공립요양병원(76개소) 중심 치매전문병동 설치· 장비 구입 지원(*23년, 7개소)
- (공립요양병원 치매공공사업) 공립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 치료 서비스 외 치매환자·가족에게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홍보 성과) 홍보의 최종적 성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인지도 증가율 등)가 미비하다는 점은 한계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기관의 우수 등의 평가는 없었음
- (정책목표) 외부의 관계자나 전문가로부터의 평가자료가 미비

- (홍보 성과) 홍보의 성과를 보여줄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수성이 증명되므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를 제언함
- (정책목표) 정책목표 기여도는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부의 관계자나 전문가로부터의 평가자료 제시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중요성, 시의성, 난이도 높음. 핵심과제들 모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분석 실시, 정책에 반영
2.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적극성 있는 홍보로 뉴스 검색 등 횟수 증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홍보의 최종적 성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인지도 증가율 등)가 미비하다는 점은 한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살색살렛여살[[[저의 여살발부 돌살이 등 모[[[[[[[] 선살[[[]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부처, 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임. 부처 내부에서 협의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기관의 우수 등의 평가는 없었음. 성과지표가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이므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를 제언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모두 달성했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 수준이며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제시한 성과지표들이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어서 우수. 정책목표 기여도는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부의 관계자나 전문가로부터의 평가자료가 미비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60

□ 주요성과

- 부모급여로 영아 가정의 소득 보전 및 경제 부담 대폭 경감
- (부모급여 지원) '23년 1월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2년생부터) 부모급여 지원하여 약 37만명의 영아가 수혜
- (금액 인상 기반) '24년부터 지원금액을 0세 70 → 100만원, 1세 35 → 5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예산·시스템을 마련
- 보육료·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28~111.3만원) 지원
-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에 적정 인건비 지원 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 제공, '24년 인건비 예산 추가 확보('24년 단가 2.5% 인상)

- (추진일정 충실성) 분기 내 일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보육료지원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책 과제의 변화방향과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 0세 부모 급여 지급율의 경우 100% 모두 지급해야 함에도 목표 자체가 90으로 덜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94.4%를 달성한 자체가 의미있다기보다 어떤 사람이 지급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장애 영유아 보육이나 시간제보육과 같이 수요가 높음에도 공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양적인 확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접근성이 높아졌는지, 즉, 지역별로 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많아지고 있는지 등을 반영한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적절하고 정책분석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연되어 추진된 일정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 매우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 부처와 협업노력을 많이 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적극행정 최우수로 부서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8.	성과지표 달성도	-보육료지원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책 과제의 변화방향과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0세 부모 급여 지급율의 경우 100% 모두 지급해야 함에도 목표 자체가 90으로 덜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94.4%를 달성한 자체가 의미있다기보다 어떤 사람이 지급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장애 영유아 보육이나 시간제보육과 같이 수요가 높음에도 공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양적인 확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접근성이 높아졌는지, 즉, 지역별로 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많아 지고 있는지 등을 반영한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 주요성과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 준비
- (평가제 개편(안) 법률 개정) 현행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
- (시범사업 운영) 자체평가 도입, 과정 중심 신규 평가지표를 적용한 현장평가, 구체적인 서술형 평가결과 제공 등 개편안 적용 시범운영
- 부모 참여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부모 모니터링단에 재원 영유아 부모를 참여시키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연 1회 모니터링 실시)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신규 선정·재선정 시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협력 여부를 반영하는 등 개방성과 보육현장 자율적 역량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드러나게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 부족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드러나게 정책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어린이집 평가등급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신규지표의 목표치 설정 기준 제시 필요. 본문을 참고하면,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비율이 1년 사이(38.5%-> 95.3%)으로 대폭 상승. 지속적인 성과지표로 의미가 있는지 참여비율 상승의 원인 분석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상위목표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드러나게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의견수렴 적절성	기존 자체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노력을 수행했는지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너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연되어 추진된 일정 존재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을 우수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재난안전사업평가 1위 달성
8.	성과지표 달성도	-어린이집 평가등급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신규지표의 목표치 설정 기준 제시 필요. 본문을 참고하면,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비율이 1년 사이(38.5%-> 95.3%)으로 대폭 상승. 지속적인 성과지표로 의미가 있는지 참여비율 상승의 원인 분석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제시한 추가 지표가 관리과제 달성 및 기여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서술 보강 필요

□ 주요성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414개소 확충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8.3% 달성
- (서비스 품질 향상)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다양한 품질관리 과정을 제공하여 교직원 공공성 함양 및 직무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보조·연장,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및 안정적 연장보육 운영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6.1만명 지원 및 보육교사의 연가 등 보육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4천명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현재의 정책대안은 영유아라는 아동발달의 특성과 기존의 보육교사 전문성 결여에 대한문제점 분석이 부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보육교사 교권 침해 관련 실태뿐 아니라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 학대실태 등 균형있는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정책대안 형성을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산과 연계된 보조교사 배치율 성과지표는 input 지표가 바로 output 지표로 되지 않고 outcome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 검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은 중첩되는 성과지표로 단일화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보육교사 교권 침해 관련 실태뿐 아니라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학대실태 등 균형있는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정책대안 형성을 할필요가 있음. 현재의 정책대안은 영유아라는 아동발달의 특성과기존의 보육교사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부재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이나 조사의 결과가 정책,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더 상세하게 서술되면 좋겠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산하기관 운영비 지원 등 단순행정업무나 유지지속업무가 다수로 난이도 보통으로 평정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가 주요과제이나 정책 당사자인 보육교사 대상 모니터링이나 접촉 제한됨.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현장의견청취 제한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부처내부 협의 조정의 목적이나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민원처리우수부서 선정
8.	성과지표 달성도	-예산과 연계된 보조교사 배치율 성과지표는 input 지표가 바로 output 지표로 되지 않고 outcome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 검토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은 중첩되는 성과지표로 단일화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보육교사 권익보호와 영유아(부모)의 권리옹호는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므로 양자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와 세부 실적이 기술될 필요가 있음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부서에서 주요과제로 인식하여 서술될 필요가 있음

63

□ 주요성과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 **(정부 재정계산) 자문위원회**(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를 운영, 재정전망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 발전방안 수립
- (국회 특위 지원)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국회 논의 참여·지원
- 급여제도 내실화
- (급여제도 개선) 유족·부양가족연금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자료 공유 근거 마련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제고
- (수급자 권리구제) 재심사위 운영(12회, 83건 심의) 및 5건 개선과제 발굴
- 가입제도 개선 및 연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 (가입 개선) 일용근로자 소득 자료 입수(국세청·고용부 협조)를 통해 사업장 가입률 지속 제고
-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자수 확대 및 사업장가입자 지원 대상 확대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연금급여제도 관련 대응은 적절하나, 연금개혁 국면의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내용은 미흡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다층노후소득보장 관련 협의조직은
 구성되고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협업노력이 높지는 않은 편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국민연금 개혁은 과제 난이도 높으며,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함 -과제가 적절하고 난이도가 높으며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충실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수립시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졌으며 환류노력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난이도 높은 과제들을 일정에 맞게 잘 수행함
4.	정책소통 충실성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언론기사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국민연금 신뢰도와 개혁 지지 제고 성과는 아쉬움
5.		연금급여제도 관련 대응은 적절하나, 연금개혁 국면의 국민연금재정 계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내용은 미흡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다층노후소득보장 관련 협의조직은 구성되고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협업노력이 높지는 않은 편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초과달성은 아니지만 100% 달성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의 목표성과가 달성되었으며 향후 기대효과가 높음

64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 역량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금운용체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제고
- ^상근전문위원 중심의 전문위원회 운영 및 안건 검토, ^위원회 위원 대상 안건 사전설명 및 합동 연찬회 개최, ^신규 위촉 위원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성·독립성 강화
- 자산배분체계 등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통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및 기금운용 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 반영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 '22년 수익률 저조 등 대응을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3월) 및 전문가 토론회·포럼(5월) 등을 거쳐 대국민 발표(6월)
 - * 자산배분 전문가 영입, 운용인력 보수수준 합리화,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 검토 등

- (의견수렴 적절성) 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외부적 의견수렴 통한 실질적 개선노력은 아쉬움
- (정책목표) 기금운용체계 전문성, 투명성 강화, 투자다변화 및 안정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현전략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기금운용과제 설정은 적절하나 정책분석 기반 충실한 대비는 불명확
2.	의견수렴 적절성	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외부적 의견수렴 통한 실질적 개선노력은 아쉬움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정책소통을 위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기금운용 관련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환류의 근거로 개선전략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기금 투자 다변화 목표 달성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성과가 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모두 달성 완료
9.	정책목표 달성도	기금운용체계 전문성, 투명성 강화, 투자다변화 및 안정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현전략 필요

65

□ 주요성과

-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및 지급액 인상을 통한 빈곤 완화
- (선정기준 상향) '23.1월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12.2% 상향 조정하여 수급기준 현실화('22년 180만원 → '23년 202만원)
- (기준연금액 인상) '14년 도입 이후 기초연금 지급액 지속 인상 중으로, '23년 노인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지급
-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실시
- **(노인빈곤 실태조사 및 장기재정 소요전망)**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위한 노인 경제상황 분석 및 장기재정추계 실시
- (적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성 평가 자문 및 제도개선 사항 검토
- (적정성 평가 실시) 노인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전망, 적정성평가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안)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행 정책목표 하에서는 성과지표를 수급자 수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수급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 등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들의 포괄 비율을 지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또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률은 목표치 미달성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책적 노력은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성과지표로 적절한지 검토 필요(인구고령화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처음으로 운영하며 기초연금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적절
2.	의견수렴 적절성	적정성평가위원회, 수급권 강화 TF, 수급자 방문면접조사 등 적절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기초연금 홍보 성과 효과적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공시지가 및 최저임금 등 변화에 따른 상황대응 원활하게 이루어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OECD, 보훈부, 개인정보, 차세대 등 사안에 따라 원활한 소통 협업 시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노인빈곤 감소 및 소득대체율 증가, 맞춤형 안내로 수급사각지대대응 적절
8.	성과지표 달성도	-현행 정책목표 하에서는 성과지표를 수급자 수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수급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 등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들의 포괄 비율을 지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또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률은 목표치 미달성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책적 노력은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지표 개발 필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성과지표로 적절한지 검토 필요(인구고령화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매우우수

(1) 평가결과

66

□ 주요성과

-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발표
- '바이오헬스 육성과 바이오헬스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거버넌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구성・운영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마련 발표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 * ¹ 혁신적 의료기기, ² 혁신·필수 의약품, ³ 디지털 헬스케어, ⁴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⁵ 유전자검사, ³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¹ 인프라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발표 및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추진일정 충실성) 모든 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일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음
-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과 시기 적절성 면에서 매우 타당하며, 제시된 난이도 역시 적절해 보임. 또한, 정책 분석 및 대비책 마련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기반한 대비책도 잘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노력이 확인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모든 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일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등에 의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대중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누락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교육부와의 이견을 협의를 통해 잘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 기관 간 협업이 우수함 -국무총리 주재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 여러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방안 수립 등은 관계 부처 및 당청 간의 협의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협업의 결과는 가시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2023년 균형발전사업 지역지원계정 우수사례 선정 등 대외적으로 정책 우수성 인정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 이는 K-BIC 벤처카페의 높은 만족도, 초기창업기업 투자유치 전략 및 해외진출 사례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이벤트의 만족도 결과에서 명확히 나타남
8.	성과지표 달성도	정량적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의 객관적 우수성이 입증됨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67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 개발체계 구축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기본계획 수립·발표
- **필수의료** 확충, **보건안보**, **디지털 대전환**, **혁신생태계** 조성 등 국민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R&D 투자확대
-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 **사업참여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의사과학자 양성 범부처 중장기 전략 수립
- 보건의료 R&D 투자확대
- (R&D 통합시행) '24년 R&D 사업 통합시행계획수립'을 통해 복지부 주요 R&D의 전략별 예산 편성(총 62개 세부사업, 7,801억원)
- (혁신 R&D 촉진) 팬데믹, 초고령화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 혁신적 R&D 사업(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기획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미달성된 성과지표 존재 및 목표치 도전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책목표)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융합형 의사과학자의 양성 목표가 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달성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
- (정책목표)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예산 편성 등의 어려움이 있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보이고, 정책 분석과 대비책이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임 - '국가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R&D 투자 확대,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협력 강화,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 상용화와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모든 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일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등에 의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대국민 공청회 및 여러 포럼과 심포지엄 등으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잘 작성된 것으로 보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내용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내부 협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책 성과는 우수하나, 국회나 언론 등 제3자 등에 의하여 성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융합형 의사과학자의 양성 목표가 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달성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8

□ 주요성과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 추진
- (제약)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3.24)
- (의료기기)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4.4)
- 중장기 연구, 펀드, 시설 투자 등 통한 우수제품 개발 지원
-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문가컨설팅,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제약기업 면담 등 통한 수출지원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논리적 제시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미달성된 성과지표 존재 및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제약바이오의 수출액이 미달성 되었음(코로나 특수로 인해 증가되었던 수출액으로 인해)
- 성과지표가 현 시기에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현황만 제시되어 있고,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논리적 제시가 충분치 않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축된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투자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 졌으나, 내부 협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투자액 마련을 위한 펀드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이 잘 된 것으로 보임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상황 대응을 노력한 부분이 인정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내용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내부 협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책 성과는 우수하나, 국회나 언론 등 제3자 등에 의하여 성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현 시기에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제약바이오의 수출액이 미달성 되었음(코로나 특수로 인해 증가 되었던 수출액으로 인해)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5,000억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 성과가 돋보임

□ 주요성과

- '23년 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5.29.)
-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인환자 '22년 25만명→'27년 70만명을 목표로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 마련
-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6.5.)
- 외국인환자 유치, 한국 의료기관 및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4대 전략 마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21년 12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제31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정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된 것을 우수한 성과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객관적으로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주제의 특성상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할 때에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고 판단되며, 정책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선점을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충실히 진행하였다고 인정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졌고, 목표치 설정 및 사업 내실화 등에 대한 지적사항의 환류가 잘 된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등에 의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외 홍보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5.		현장 모니터링의 범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장 모니터링 정도가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 활발해진 이동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타 부처 및 내부 관련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된 것을 우수한 성과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적절하고, 목표치도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성과지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 하기 어려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개최한 부분이 돋보임

*7*0 |

□ 주요성과

-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 및 대국민 활용앱인 '나의건강 기록' 정식 가동('23.9월~)
- (디지털헬스케어) 안전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입법 필요성 공감대 확산("23~)
- (전자의무기록 인증 활성화)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 인증 획득 으로 의료정보 상호운용성 기반 마련 및 인증 관련 제도 개선
- (진료정보교류 확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확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확산
- (원격협진 서비스) 의료인 간 원격협진 지원으로 의료취약지 주민,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

- (추진일정 충실성) 지연되어 추진된 일정이 존재하며 분기 내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홍보 성과) 언론 등에 의한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분석을 기반으로 정확한 과제와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바가 인정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이루 어졌고, 수상실적 제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환류된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연되어 추진된 일정이 존재하지만, 법률 등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등에 의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시도 간담회, 병원 협의 등 현장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예산 부족 등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권역별 거점의료기관 간담회 등이 잘 이루어졌으며, 예산 감소에 따른 상황변화에 적응 대응한 부분이 인정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건보, 심평원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매일경제가 주관하는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을 수상한 것으로 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도전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고,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성과지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가 우수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고, 정책목표 기여도 및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잘 작성된 것으로 보임 -디지털헬스케어법 국회 상임위 소위 안건 상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주요성과

-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정책추진 및 법·제도 등 마련
- 데이터 정책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보건 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개최('23.6월)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23.2) 및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3.2),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23.7),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시범사업) 희귀질환자(1.5만 명) 모집 및 기존 사업(1만 명) 연계로 구축한 2.5만명 규모 임상·유전체 정보 개방 완료('23.6월)
- (본 사업) 국민 100만 명 규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3.6월) 및 본사업 추진 준비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책 성과는 우수하나, 국회나 언론 등 제3자 등에 의하여 성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외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성과를 작성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책의 목표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개인정보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고, 기획용역 연구 등 정책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이루어짐 -데이터의 중요성 커짐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이슈가 같이 성장 했던 2023년도에 적절한 과제와 정책분석을 수행했다고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졌고, 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지적사항이 환류된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등에 의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내외부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책 성과는 우수하나, 국회나 언론 등 제3자 등에 의하여 성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성과가 돋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수립한 성과지표 모두 달성 완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책의 목표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고, 정책목표 기여도 및 기대효과가 개념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72

□ 주요성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임상연구 대상자 확대, 임상연구 연계 치료제도 도입** 등 첨단재생 의료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개정 추진**
- 고위험 연구 심의 절차 개선 및 위험도 재분류 방법 마련 등 추진하여 연구계획 누적 110건(+53) 접수, 34건(+20) 적합 의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 및 역량 강화
- 병원급 → 의원급 이상 접수 확대(56-85개), 심사항목 개선(95→50여개) 및 세포 배양 GMP 환경 실습교육 기획·제공('23.9~11) 등 연구역량 강화
-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전자전달·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등 신규 R&D 기획
- 첨단재생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분류체계(안) 마련 ('23.6~10) 및 기술가치평가 모델(안) 구축·시범사업 운영('23.7~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재생의료와 관련한 현안이 충분하게 검토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재생의료와 관련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극성과 지표의 적절성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될 부분이 존재함
- 단년도에 종료되는 성과지표보다는 재생의료 정책의 특성을 반영 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 필요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2.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졌고, 홍보 및 성과지표 달성 등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언론 등에 의해 홍보성과의 우수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홍보 방식이 타과 대비 다소 단조로운 점이 아쉬움	
5.		현장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재생의료와 관련한 현안이 충분하게 검토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내외부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인식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양호함 -정책 성과는 우수하나, 국회나 언론 등 제3자 등에 의하여 성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는 잘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극성과 지표의 적절성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될 부분이 존재함 -단년도에 종료되는 성과지표보다는 재생의료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도와 기대효과 등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신규 R&D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지역 복지 역량 강화에 대한 서술 강화 필요	o 2024년 성과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 지역복지 역량강화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겠음(~'24.6월)
I-2-① 수요자 중심의 지역 복지 전달체계 구축	o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반영 정도를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여건 상황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변화에 대한 현장 모니
	o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정성 및 논리적 기술 필요	o 2024년 성과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를 보완하겠음(~'24.6월)
	o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수렴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o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상황 관리 지속('24.1월~)
I-2-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o (홍보 성과) 홍보성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며, 무엇을 누구에게 홍보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면 좋겠음	
복지행정 확대	o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설정 근거 및 도전성에 대한 고민 필요	 정책 성과,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예정 ('24.4월) 과거 실적,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 검토 ('24.4월)
	o (추진일정) 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o 일정 미준수 연구용역은 기 완료되었음('23.11.28)
I-3-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o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기술 필요	만족도 요인 분석 등이 포함된 만족도 조사 실시 추진('24.3분기)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o (성과지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필요	 성과지표 대체 당초 지표 : 처우개선 위원회 개최 횟수 대체 지표 : 처우개선 정책 노력도가 반영되는 지표로 대체('24.8)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추진일정) 추진일정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o '24년 BF인증운영기관을 설치 예정이며,
	필요	- 고시 개정에 대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I-4-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홍보 성과) 홍보 성과 내용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장애 인권 관련 국민체감 홍보전략 다변화 필요	│ 우얼 등 대로비 쪼(배
	o (현장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강화 필요	o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간담회 수시 개최 등 현장 소통 강화(12월)
	(홍보 성과) 홍보를 통한 장애인주치의 증가,이용자 증가는 성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성과를 더기술할 필요가 있음	충실성을 위해 추진한
I-4-⑤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	o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수상이나 긍정적 대외평가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o '24년 평가시, 평가자료 내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이나 긍정적 대외평가 내용을 작성하겠음('24.12월)
	o (성과지표) 성과지표 난이도 및 종류에 대한 검토 필요	o '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난이도·종류 등을 감안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하겠음('24.3~4월)
	o (추진일정 충실성) 추진일정이 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o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과제 추진계획을 관리하겠음
Ⅱ-1-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o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기술 필요	o 추진 과제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내· 외부 변동 상황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o (성과지표) 부서를 대표하는 지표로 재구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2024년 성과관리 지표 수립 시 의료자원 운영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 장비 자원의 분포 및 동원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관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겠음
	o (의견수렴)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o 제약협회 등과 정례적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기적 의견수렴 진행 ('24.1월~)
표-2-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성과지표) 성과지표 유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항목별 이행 여부를 카운트하고, 시범사업 진행 여부만으로 달성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보험약제 개선의 실질적 내용 	o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약가제도 개선 여부 등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으며,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성과지표는 활동량보다는 활동을 통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선정 필요	- 항암제, 신약 등 의약품 등재에 따른 혜택을 받는 환자 수 등을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24.4월)
	o (추진일정 충실성) 분기 내 일정이 추진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o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П-3-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성과목표치가 수요대비 공급의 미흡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응급검사가 아니므로 기관 수보다는 검사 수요대비 처리 역량으로 지표를 변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o DTC 유전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유전적 특징을 파악하고 사전에 건강 관리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o 따라서 '인증 항목 개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DTC 인증 항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Ⅲ-6-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o (정책분석 충실성) 첩약 건강보험,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원인 분석 필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24.2월) o 한의분야 2개 시범사업에 대한 미활성화 원인 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음(~'24.12)
강화	선난 판국 콘프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계기 분석실시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 (첩약) 시범사업 활성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이 '24.4월부터 추진되므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미활성화 여부 검토 및 원인 분석 예정
	o (성과지표)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개선도를 임상연구실적과 만족도를 합산해서 평가 하였는데, 보다 정교화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o '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목표를 정교하게 보완하겠음(~6월)
П ((()	o (정책분석 충실성)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의 구체적 지향점이 무엇인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한의약 산업 육성에서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원인분석이 필요함	
Ⅲ-6-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o (성과지표) 목표설정 근거 제시 및 성과 지표의 유형 검토 필요	
	 목표설정의 근거가 함께 제시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성과지표가 활동량을 측정하는 지표이어서 제한적임. 활동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그러한 필요 	및 지표 유형 등 보완할 수
Ⅲ-1-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고려할 필요 O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와 양육비용 경감 위한 종합적 대책 협의 필요	o 청년층 주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재구조화 및 ' 저출산 추가대책'을 추진하겠음('24.1분기)
전략 마련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목표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목표 달성여부 자체와	사전·사후 평가 실시를 검토하고, 성과목표치를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그 의미를 평가하기 어려움 - 목표치 설정이 낮은 편임 - 홍보캠페인 효과성 측정의 표본대상이 저출산 대책의 정책수요자일 때 의미있는 성과지표임. 현재는 효과성 측정 표본대상(홍보캠페인을 1회라도 보기만 하면 되는가?)이 모호함. 또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결과의 비교가 필요함	시원안나는 숙면에서 부모세대(50대)도 중요함 - 다만, 정책집행의 효과성
Ⅲ-3-⑤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o (홍보 성과) 홍보의 성과를 보여줄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홍보의 대국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국민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 '23년도 78점으로 높은 수준 유지중 * 전국 17개시도 일반국민 1,200명 대상 전화조사 (글로벌리서치, '23.11월) - 치매 질환, 치매안심센터 인지 여부 등 국민의 인식도 조사 ** '16년도 조사결과 66점 수준 이었으며, '21년 이후로 77~78점 수준 유지중 ○ 추가로, 치매정책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진행중 * '23.1~9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24.3월) ** 치매역학실태조사(~'24.3월) : 치매안심센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수성이 증명되므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를 제언함	o '24년도 상반기 치매안심 센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24.3분기)
	o (정책목표) 정책목표 기여도는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부의 관계자나 전문가로부터의 평가자료 제시 필요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파악(~'24.5월) * (조사기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갤럽 등
	o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드러나게 정책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Ⅲ-4-② 믿고 맡길 수 있는	o (홍보 성과) 홍보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지니 니 중니 니기로 이 시
어린이집 운영 관리	o (성과지표)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어린이집 평가등급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대체할 수 있는 성과지표
	- 신규지표의 목표치 설정 기준 제시 필요. 본문을 참고하면, 부모모니터링단 참여비율이 1년 사이(38.5%-> 95.3%)으로 대폭 상승. 지속적인 성과지표로 의미가 있는지 참여 비율 상승의 원인 분석 필요	- 보육품질관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을
Ⅲ-5-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현행 정책목표 하에서는 성과지표를 수급자수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수급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 등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들의 포괄 비율을 지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또한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률은 목표치 미달성인데,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이면 정책적 노력은 다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다른 지표 개발 필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성과지표로 적절한지 검토 필요(인구고령화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점 등을 고려) 	o 국민연금공단, 연구원과 협업하여 기초연금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보완 방안을 검토 하겠음('24.7월)
IV-1-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o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객관적으로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치실적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겠음(~'24.6월) 의료 해외진출 대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를 조사 하겠음('24.3월~)
	0	'23년 유치 실적을 집계 하고 분석, 검토를 통해 '27년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도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치를 재설정 하도록 하겠음(~24.4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0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건수, 증가율 및 진출 후 지속 운영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_	도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산출 방법 등의 변경을 검토하겠음 ('24.3월~)
)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재생의료와 관련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음		재생의료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연중)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극성과 지표의 적절성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될 부분이 존재함		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재생의료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으로 관리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검토 하여 설정하겠음('24.4월)
)	필요가 있음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재생의료와 관련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극성과 지표의 적절성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될 부분이존재함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재생의료와 관련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극성과 지표의 적절성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될 부분이 존재함 단년도에 종료되는 성과지표보다는 재생의료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 핵심기능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 ① 촘촘하고 위기가구 발굴
- ②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③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 ④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①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 ②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 ③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 ④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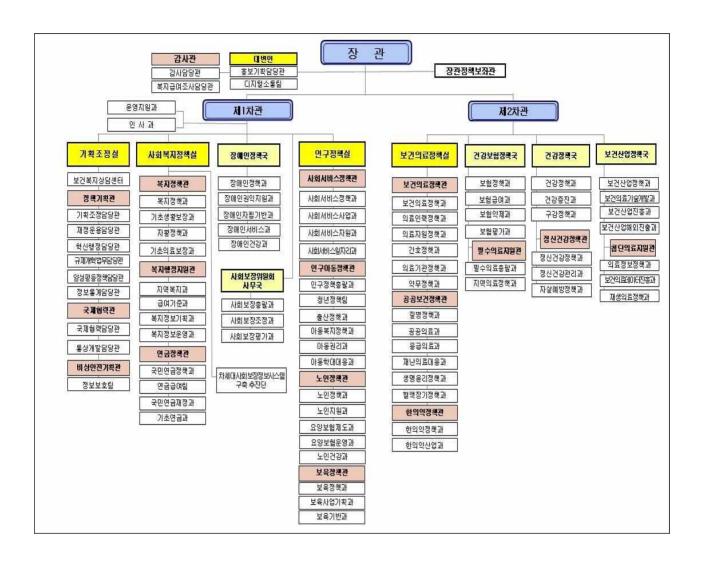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 ①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②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③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보다 나은 미래 준비

- ①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② 저출산 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③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 ④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 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

□ 조직도('24.1월 기준)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빈곤·질병·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비전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국가 건설

전략목표	l.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의 건강하고	III.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IV.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성과목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I)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성과지표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성과지표 개요

-- \langle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angle -

- 개념 : 생활이 저하되는 상황에 놓인 개인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과 급여와 관련된 사회적 지출
- 조사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 9대 정책영역 중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가족, 기타 영역은 사회보장위원회(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위탁) 산출 / 보건. ALMP. 가족 중 영유아교육(ECEC) 영역은 별도 기관에서 산출하여 원용
- 조사방법 : 중앙정부·지자체 결산자료 및 사회보험·공기업 지출 자료 활용하여 산출
 - * 급여지급과 관련된 관리, 조사, 평가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비용은 제외
- 측정산식: 공공사회복지지출액(중앙정부·지자체, 사회보험, 공기업) / 명목 GDP
- 조사연혁: OECD 가입('96년) 이래, '98년부터 격년마다 통계 제출·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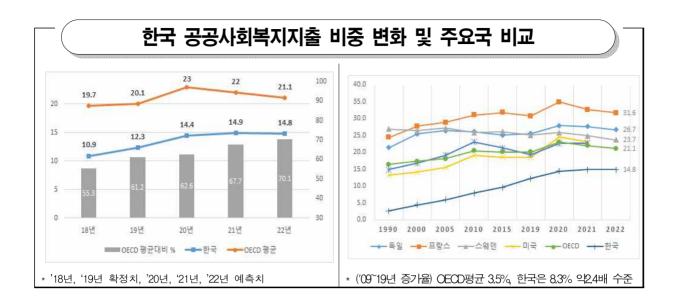
□ '23년 측정결과

- (확정치) '18년도, '19년도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각각 10.9% 및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하였습니다.
- (예측치)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로 '20년도 GDP의 14.4%, '21년도 GDP의 14.9%, '22년도 GDP의 14.8%으로 '20년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4%로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 ※ 격년으로 공표하는 통계로, '23, '24년 수치는 OECD의 발표('25.1월) 후 업데이트 예정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추이 > (단위 :%)

 구 분	확정	치	예측치			
丁 世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 국	10.9	12.3	14.4	14.9	14.8	
OECD 평균	19.7	20.1	23.0	22.0	21.1	

* 출처: OECD Stat. Social expenditure('23.1월 기준)



□ 성과분석

- []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4인) 인상하여 '23년 5.47%(4인)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였습니다.('23.7.)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이를 통해 '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3년 대비 13.16%, 21만 3천원(4인) 인상**('23.7.)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약 1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생계급여 지원수준) (4인) ('23) 월 162만원 → ('24) 월 183만원(+월 21.3만원(13.16%)) (1인) ('23) 월 62만원 → ('24) 월 71만원(+월 9만원(14.40%))
- ** 월 21만 3천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18~'22) 인상한 19만 6천원보다 높은 수준

-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을 상향 ('23.1.)하여 수급자 발굴과 생계·의료지원 강화를 실현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

	변 경('23년~)							
구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농어촌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 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9,900 만 원	8,000 만 원	7,700 만 원	5,300 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十/1・址书日어	긴 건	긴 편	긴 전	긴 편

<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 >

	변 경('23년~)							
구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수거· 교육급여	1억2,000만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생계ㆍ의료ㆍ	1억7,200	1억5,100	1억4,600	1억1,200
의료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주거 • 교육급여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 "약자복지 강화로 국민의 기초생활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수립·발표('23.9.) 하였습니다.
 - ^①기초생활 보장수준 강화, ^②빈곤 사각지대 해소, ^③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 ^④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생활보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수급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이후 최대치인 255만명('23.12.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급자 수 추이) ('17) 158만명 → ('19) 188만명 → ('21) 236만명 → ('23) 255만명
-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수준 인상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지원금 단가를 기준 중위소득 30→32%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23. 12월 고시 개정),
 - 동절기 **연료비를 11→15만원으로 36.4% 인상**('23.2월 고시개정) 하였습니다.
 - 타인의 범죄피해로 기존 거주지에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23.3월 고시개정).

-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하는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24.1 시행)하였습니다.
 - * $(7^{(7)})$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rightarrow (7^{(7)})$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 ** 1억 150만~2억 2,800만원 → 1억 9,500만~3억 6,400만원 (서울 기준 59.7%↑)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식대 수가를 인상***('23.1월)하고, **거리노숙인 의료급여 자격 기준을 완화**** ('23.1월)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 치료식 5,060→ 5,880원
 - ** 3개월 이내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당일 의료급여 자격 부여 가능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 입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38→73개로 확대('23.7월)하고, 누적 1,905명('23.9월 기준)에게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 관리대상자 중 82.5%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 73.1%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23.6월 조사)

②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복지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습니다.
 - 수도, 가스 체납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복지 위기 의심 가구 133만 명을 선별하고,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하여 상담, 방문 조사를 통해 60.4만 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 * 기초생활보장 23,629명, 차상위 8,848명, 긴급복지 13,719명 등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였고, 분석모형 개선 등을 통해 지원자 수·정확도(지원율)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목표: 49.6만 명/44.5%, 실적: 60.4만 명/45.1%).

- * ('22년) 39종 ('23년) 44종(추가 5종: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발굴을 위해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 등 상세주소 정보를 연계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였습니다('23.11).
 - * 이동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3.28), 확인 절차 마련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23.9.29)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연락두절 위기가구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23.7~11).
- 최초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하여 고독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22.8~)을 지속 시행 하였으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고독사 정의 확대('23.6 시행),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23.9 공포) 등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등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 ('19) 2,911→('20) 3,197→('21) 3,312→('22) 3,352→('23.6월) 3,399
 - **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제공 실적('23.11월): 436만건
 -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풀(84명)을 구성·운영 및 현장 슈퍼바이저 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슈퍼비전 지원을 확대 하였고, 사례관리 업무가이드 제공,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현장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 * 통합사례관리 실천 가이드 개정, 우수사례 공모전(20건 선정), 사례공유 세미나 개최(362명), 통합사례관리사 전국대회 개최(320명), 사례관리 컨퍼런스 개최(3회, 1,928명)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컨설팅, 평가, 매뉴얼 배포(~'23.12)하였고,

- * 매뉴얼 배포(2회), 교육(6회), 온라인 설명회(시도 및 시군구 각 1회) 개최, 17개 시·도 컨설팅(2회) 및 시행결과 평가(16개 시도, 30개 시군구 대면평가)
- 복지기반 부족한 지역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2기 8개 지역 포함 총 16개 시군구) 하여 컨설팅 및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 * (시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저소득층 밀집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의 지역 문제 지체 해결을 위한 자생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및 역량강화 컨설팅 등 지원
- 복지사업별 특성(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적합한 경제력 평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 자격확인,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분리평가, 보편적 지원(경제력평가 없음)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를 80종까지 확대*하였고,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를 가입자에게 2,003만 건 안내하였습니다.
 - * '22년 76종 → '23.2. 80종
 -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자 수를 968만 명**(누적 1,033만 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조사(정기 및 월별 조사)하고, 데이터 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보완과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사용자 편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를 운영하여, 자체 모니터링과 사용자 문의(SR*)분석을 통해 문제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시스템 개선을 진행
 - * 행복e음 콜센터로 접수된 시스템 사용자(공무원 등)의 사용법 문의,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등
 -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서 초기상담,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이음 구축('23.9월)*
 - * 전국단위 앱 배포('23.9월) 이후, 현재 지자체 시범운영('23.9~11월) 결과 분석 중

-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를 13종 확대 ('22년말 37종→'23년말 50종)하여 방문신청 불편 감소

③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지원법 시행('22.3)에 따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4~'28)」 수립·발표하였습니다.('23.12.12, 사회보장전략회의)
- '23.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였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체계도 >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추진전략	사회시	너비스 고도화	복	지-고용-성장 선순환							
		3대 분야 9대 추	진과제								
다양한 서	네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애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① 新수요 대응	· 서비스 강화	4 품질 관리 강화		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	비스 확대	5 규제 합리화		8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 확충	6 공급자 성장 지원	<u> </u>	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등이 소통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 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5회)을,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타운홀미팅**(1회)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요

- (**논의주제**) 미래사회보장,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등
- (진행방식) 온라인 포럼 형태로 총 5회 진행('23.5~11월)
 - * 발제자/토론자는 오프라인(중앙사회서비스원 영상회의실 등) 참석, 유튜브 생중계 진행으로 내용 대국민 공개
 - (운영) 각 회차별 확정된 주제로 사회자 주도로 진행, 사전에 지정된 발표자(2~3명)가 발제하고, 패널이 토론(4~6명)하는 형식으로 운영

2023년「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개요

- (일시·장소) 2022. 11. 17.(금) 15:00, DDP 서울-온 영상 스튜디오
- (참석자) 국민참여단 200명 내외.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패널.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 (주요 내용) 패널토크 및 국민제안 토크를 통한 정책제언 및 사회서비스 인식 제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모태펀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연속성 있는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한 '24년 정부 출자금(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총 145억원 규모 = 정부 출자금 100억원 + 민간 출자금 45억원
 - 전문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컨설팅, 기업-투자자 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2차년도로서, 인증대상 사업을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에 더하여 발달재활서비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3년도는 총 24개소에 인증을 부여하였고, 작년 인증기관 (15개소)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도입하여 인증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영세한 제공기관들이 대부분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주체 혁신'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과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유화 사업에서는 장기요양분야, 집수리 분야 등에서 3개의 거점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우수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다변화 사업에서는 총 10개의 컨소시엄을 공모·선정하여 각 지역에 맞는 복합적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영세한 공급기관들이 모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였습니다.
- 민간의 자발적인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육성·지원하여 공공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 사회복지자원봉사, 기부식품등제공(푸드뱅크), 멘토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등
-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2회)와 정책포럼(1회)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공헌 업무협약('22.12월) 기관과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연계· 협력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찾아가는 문화공연(6~7월,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및 자립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7월)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민간 기업(기관)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및 관심 제고 등 민간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기여도가 높은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인정마크를 부여
 - ** (인정기업 현황) '21년 350 → '22년 404개소 → '23년 531개소
- 비대면 무인푸드뱅크 운영*, 민간 참여기업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계층 및 재해·재난 피해 가구 등에 긴급구호식품**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21년) 4개소 시범운영(서울 성동구, 전남 나주시, 충북 제천시, 광주 북구) → ('22년) 5개소 신규 설치(서울 금천, 강원 원주, 경기 광주, 대구 남구, 충남 천안) ('23년) 3개소 신규 설치(서울 도봉, 인천 연수, 충북 진천)
 - ** ('20년) 6개 지역, 8,000명 → ('21년) 10개 지역 10,000명 → ('22~23년) 20개 지역 10,000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연도별 모집실적 >

(단위: 백만원, '23년 12월말 기준)

구분	′13	′14	′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144,033	157,720	160,901	178,316	202,803	219,849	236,548	211,849	240,047	247,592	252,710
식품	128,284	136,956	139,371	152,067	164,819	185,064	197,450	174,327	189,729	199,147	210,501
생활용품	15,749	20,764	21,530	26,249	37,984	34,785	39,098	37,522	50,318	48,445	42,209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사회서비스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심리지원, 병원 동행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51개 시군구 에서 국비 196억원 규모로 8월부터 시행하였으며,
 - 그간 노인·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청·중장년을 위한 서비스로 1개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사업방식이 아닌, 이용자의 욕구나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도서 벽지, 산간 지역 등에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취약지 지원사업'을 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신규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 18개소를 선정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장비, 운영비 및 인센티브 등을 거점 제공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 신규사업 외에도 기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부터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 신청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3만 7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경영·노무· 회계·품질관리 컨설팅, 안전점검, 교육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긴급돌봄, 중증 치매·장애, 취약지 소재 돌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가의료급여 등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 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 * (설치 현황) '19년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년 7개 지역(광주, 세종, 강원, 충남, 인천, 대전, 전남), '21년 3개 지역(전북, 울산, 제주), '22년 2개 지역(충북, 부산) ** ('23.12월 기준) 긴급돌봄 22.278건. 중증 치매·장애·취약지 소재 등 민간기피 66.288건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돌봄인력 양성기준 체계화 및 역량 강화 등 추진과제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4~'28)에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최신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 통계청 통계(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및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수정체계('21. 보사연)를 활용, 사회서비스 산업적·직업적 특성, 일자리 연령 특성 등 분석
- 고용전망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일자리 TF(기재부-고용부)에 참여, 복지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및 빈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매월 일자리 TF 참여(12회)하여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적기 시행 등 집행 점검, 보건복지업 분야 빈일자리로 요양보호사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 이슈 전반에 대해 논의·대응하였습니다.
- * 빈일자리 6대 분야 : 보건복지(돌봄)·제조·물류운송·음식업·농업·해외건설
- 복지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월 1회 집행 점검을 통해 목표 102만개 대비 114만개 일자리를 창출(112.7% 초과 달성)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 노인일자리(102만개), 자활근로(5.9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3.7만개), 장애인일자리(3.2만개)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예산 확보^{*}를 통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제고^{**}했습니다.
 - * ('23.) 8,170억원 → ('24.) 8,719억원(+549억원 증, 단가 인상 2.5%+a)
 - ** 가이드라인 준수율 : ('21) 90.2% → ('22) 93.4% → ('23) 94.1% → ('24) 95.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등 처우개선 정책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한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23.5~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법정 조사(3년 주기)
 - 시설 종사자의 휴가·교육 시 종사자를 대체할 인력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 대체인력 지원건수: ('21)29,057건→('22년)31,114건→('23년)34,446건
 - * 대체인력 지원일수: ('21)45,680일→('22년)46,615일→('23년)50,909일
 -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점검(10회), 관계기관 간담회(2회), 워크숍(25개소, 53명)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8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 건강검진을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해당이며 시설·장비 등을 '26. 12월 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 ** 국제바로병원(인천)·성남시의료원(경기)·천안/서산의료원(충남)·우리동네의원(광주)· 목포시/강진/장흥통합의료원(전남)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7개소**가 추가로 사업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련함
 - ** 인제대부산백병원(부산)·울산대병원(울산)·구미차병원(경북)·전남대병원(광주)· 건국대충주병원(충북)·일산병원(경기)·서울대병원(서울)
 - 효율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관리·운영 기반 마련 및 장애인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 (구성) 사업관리 및 협업·업무지원·장애인 건강통계 플랫폼, 대국민 홍보포털 (전달체계) 중앙센터(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 보건소 CBR 사업(시·군·구) 중심으로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건강검진·산부인과 등 연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서비스 등록 장애인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 * ('22년) 2,532명 → ('23년) 3,802명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4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24.2. 시행)을 마련했습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23.10.))
 - * (주요내용)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확대(중증 → 전체 장애인),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강화(연 18회 → 연 24회), 주장애관리 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양질의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지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충남권, '23.5.),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충북권, '23.12)를 개원하였습니다.
 - * (건립) 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 (지정·운영) 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6.3억)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지침을 개발·보급하여 **공공재활사업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계획('24.3. 시행)^{*}을 마련하여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23.11.))
 - * (현) 비수도권 8개 권역별 최대 3개
 - → (개선)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
- 전국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으나, '23.4월부터 '전국에서'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종전) 서울에 사는 장애인 B씨는 부산 지하철 이용 시에 교통복지카드 사용 불가하여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지하철 탑승 → (개선) 서울에 사는 장애인 B씨는 부산 지하철 이용 시에 교통복지카드로 무임태그하여 승차 가능
 -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3.4월 부터 '전국에서'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종전) 강원도에 사는 장애인 A씨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불가 → (개선) 강원 도를 포함하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증 반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를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23.12월말 현재).

- * 이종성 의원실 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는바, 유족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장애인등록증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납율이 저조하고, 관련 민원이 빈발하여 지자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개정법률안은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반납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하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23.5월~'24.3월, 4개 지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보시연)
-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종사자 1인당 담당 사건 수** 감소시키고, 개별 사건 지원 집중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강화*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매년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 점검, 교육실적 미흡기관 특별교육 등 조치
 -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대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 (강사양성) '19년 28명 \rightarrow '20년 53명 \rightarrow '21년 110명 \rightarrow '22년 148명(누적) \rightarrow '23년 194명(누적)
 - ** (인식개선 교육기관 '21년 14개소 -> '22년 21개소 -> '23년 30개소(누적)

-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 개선과제 도출 및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5년 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 * (편의시설)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기등 23종, (조사대상)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 편의증진 및 규제개선를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연속 손잡이 (핸드레일)와 출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권익위 제도개선 제안 반영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4.1.16.) 및 기업 규제 개선 반영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23.12.11).
- 장애인등이 시설 이용·접근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민간 의무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 *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장애인개발원, '22.12~'23.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의 BF인증 확대 방안 연구(장애인개발원, '23.1.~'23.6)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3,180원**('23.1월~) 지원하였으며 '23년 중증장애인 35.6만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연령** 도래자 일제정비 등을 추진하여 약 1.3만건의 신청을 독려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2,000개 추가 확대**하여 **총 29,546명**('23)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 직업상담·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1.7만명에게 지원하여 약 5.4천명의 취업을 지원(취업률 32.5%)하였습니다.
- '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01%로 달성** 하였고('21년은 0.99%로 법정구매비율 1% 미달)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심의·발표('23.4.12)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보증보험료 감면** 및 **꿈드래 전용카드 발급을 지원**하였습니다.
- * 시정조치(4,5,6월), 교육·구매컨설팅(938개), 홍보장터·박람회(4,5,10월)
- ** 서울보증보험 보험료 감면 업무협약('23.7.12.) 우체국물류지원단 업무협약('23.8.21.)
-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인상**("22년 14,800원 → '23년 15,570원)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전년 대비 **1만여명 확대**('22년 13.9만 → '23.10월 14.9만명)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가산급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 및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 지원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2) 446점 → ('23) 426점
 - ** 지원대상: ('22) 4,000명 ('23) 6,000명 / 단가: ('22) 2,000원 ('23) 3,000원
-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특별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라도 일상·사회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23.1월~)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 도전적 행동(자·타해)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체계*** 지원('24.6월~')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 (24시간 개별) 낮 활동 지원 + 주거공간·지원인력을 통한 야간돌봄 지원('24년 176억) (주간 개별)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24년 142억) (주간 그룹형)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24년 405억)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비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수당(월 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소진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최대 7일)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 ('23.4월~) 전국 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34개소 설치·운영. ('25년)본사업 전환
 -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고, 가정과 유사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 * (낮활동) 세면·목욕, 취미·여가 지원, 상담 등, (주거생활) 야간돌봄, 안전관리 등
 - 서비스 **적시 이용과**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오픈하우스를 실시**하였습니다.
 - * (사전등록제)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단계에서 중도포기를 예방하고, 가정 방문 상담 등 이용자 접근성 제고
 - ** (오픈하우스)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사전체험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응력 향상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주간·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활동을 제공하는 주가·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과 서비스 제공단가**를 확대하였습니다.
 - * ('22년) 주간 월 165시간, 방과후 월 44시간 → ('23년) 주간 월 176시간, 방과후 월 66시간
 - ** ('22년) 시간당 14,800원 → ('23) 시간당 15,57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활동지원** 동시 이용자의 **선택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차감제를 축소·폐지하였습니다.
 - * 기본형 : 폐지('22. △22시간 → '23. 폐지), 확장형 : 축소('22. △56시간→ '23. △22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 교육·상담, 가족휴식을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양육기술훈련 수행기관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 * (교육) 영유아기 7,237명, 성인전환기 7,810명, 성인권 교육 8,572명('23.11월 기준)
- ** (수행기관) 한국자폐인사랑협회('22년 지정), 동래구 장애인복지관('23년 지정)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이용인원 1,002명, 제공기관 209개)과 가족 캠프·자율여행(이용자 14,0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금전 관리를 위한 재산신탁을 운영('22.5월~, 120명, 국민연금공단 신탁)하고, 공공후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23년 심판청구 690건).
-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 * (1차 조사, '22.6~'23.5) ① (조사지역) 경기 하남, 경남 창녕, 전북 김제, ② (목적)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사각지대 발굴 등 실태조사 모델 마련
 - ** (2차 조사, '23.10~'24.10) ① (조사지역) 천안시, 안산시, 홍천·횡성, 영암·보성, 통영 ② (목적) 1차 조사결과 기반으로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지원을 위한 거점병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 * ('22) 8개 시·도, 10개 병원 → ('23) 9개 시·도, 12개 병원(+2개소)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를 해소하고 장애 조기개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계부담의 경감을 위해 사업 시행 이후 동결되어 왔던 바우처 지원액을 월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였습니다.
 - * ('22년) 69천명, 999억원 → ('23년) 79천명, 1,270억원
-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하였습니다.
-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였습니다.
 - 약자복지 강화, 사회서비스고도화 등을 통해 全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23.3월).

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장 전략회의('23.5, 대통령 주재)」를 개최하여 **14개 관계부처** 및 사회보장 분야 9개 정책위원회* 민간위원과 새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 (참여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5개년 사회보장 비전·전략으로써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 사회보장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사회보장 주요 이슈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 포럼('23.9~11, 4회) 및 사회정책 연합학술대회 세션 개최(11.18) 등
-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범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 * (주요 안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등
 - 전문위원회 및 실무·본위원회의 **단계적 검토***를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본위원회(3회), 실무위원회(3회), 전문위원회(26회), 정책간담회(1회), 민간위원 사전설명회(1회) 등 총 34회 개최
- 사회보장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OECD 국가 간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산출하고 공표하였습니다.
 - * '18, '19년 확정치 및 '20~'22년 예측치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23.1)

-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회 복지지출의 산출방식과 분류기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 재정 전문위원회(4회) 포함 총 8회 개최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변화한 **인구·거시경제 여건 점검과 재정추계 개선점 논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추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 '23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포럼(12.15)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전제적인 사회보장제도 정합성 제고 및 중앙-지방 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 (기본방향 마련) 중앙-지방 간 중복·누락 없는 사회보장체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23.10.4.)을 거쳐 사전 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 ▲약자복지(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서비스(서비스·바우처) 중심 복지체계 구축
 - (제도개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금액 이하 기초지자체 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속협의*(Fast-Track) 도입 등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기초지자체 대상 연간 2억원 이하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신속협의를 통해 협의완료 처리
 - (사전협의 시스템) 사전협의 시스템을 개발·도입('23.7.3.)하여 기존 공문·수기 관리방식에서 사전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유사사업 검색 및 설계지원 기능을 제공하여 사업기획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수립('23.8)을 통해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로드맵과 주거용재산 및 자동차 등 기초 생활보장 재산기준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 의료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위화**를 추진하는 등 **의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등 지역사회가 중추가 되어 수급 권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월)」에 따른 추진 과제를 지속 이행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ICT를 활용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구축을 통해 위기 복지위기상황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 강화 및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지원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 위기정보 확대,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견 가능성 및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의심가구 확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관계망 형성 및 일상생활 능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고독사 정책 추진 및 연구의 기초인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들 복지급여가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상이한 복지사업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복지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의 편의를 위해 웹·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새롭게 시행되는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신규 구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여, 국민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미설치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 확충('23. 12→ '24. 16개소)하겠습니다.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맞춤형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검진 시설·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등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신규 검사항목**과 **대체** 검사항목 등을 발굴하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24.3.)하여, 수도권까지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워하겠습니다.
 - * 강원권, 전남권(광주, 목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예정('24.)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4단계로 개선** 시행('24.2.)하겠습니다.

<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내용(안) >

<장애인 건강주치의>

- (사업대상)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대상 확대(중증장애인 → 전체 장애인)
 ※ 장애정도 고려하여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중증장애인 방문수가 개선 및 산정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 (주장애 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 (시범지역) 전국 확대(부산, 대구남구, 제주제주시 → 전국)
- (사업대상) 중증장애인 + 치과적 중증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정신)
- 장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감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온라인 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모바일 앱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서 사진란을 삭제하겠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동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주체가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며, 사진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과는 구별 되므로 사진 표시가 불필요합니다.
 - 따라서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사진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 '24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6월~)을 추진하여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등편의법」제정·시행일인 4월10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증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6차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편의증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등이 시설 이용·접근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업재활 및 중증장애인산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신규 지원('24년 6월~)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사업('25년~)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 * (기간) '23.10월~ '24.5월
-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실천사례 중심으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재산신탁 본사업 전환('25년~')을 준비하고,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 기반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 그간 **보훈서비스의 사각지대였던 상이 3~7급 보훈대상자**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를 해소하고 장애 조기개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79천명, 1,270억원 → 86천명, 1,383억원)하겠습니다.

- 장애아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 돌봄 서비스 연간 제공 시간을 120시간 확대(960→1,080시간)하겠습니다.
 - 돌보미 연계 등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제도 관리, 통계기반** 등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지역 계획과 연계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중앙·지방의 협력적 역할분담을 지원하겠습니다.
-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표^{*} 및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을 통해 한국 사회보장 재정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지향점을 제시하겠습니다.
 - * 추계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장래인구추계('24, 통계청), '24년 예산 반영하여 발표 추진('24,하
 - ** '20, '21년 확정치 및 '22~'24년 예측치 산출(안) 마련 ('23.12), OECD 제출 예정('24.3)

(<mark>전략목표Ⅱ)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mark>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성과지표

국민건강 검진수검율

□ 성과지표 개요

〈 국민건강 검진수검율 〉

■ 개념 : 건강검진을 통한 만성질환 및 주요 암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강화로

국민건강상태 개선 도모

• 조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대상 : 당해연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대상자

• 조사방법 : 건강검진통계연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DW 발췌

■ 측정산식: (일반·암·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인원/ 일반·암·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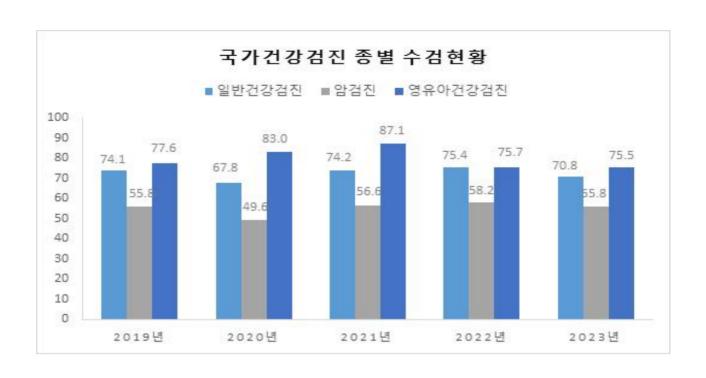
□ '23년 측정결과

○ (개요)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일반·암·영유아) 수검율은 평균 69.1% (단위: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9년 대비 2023년 수검률 치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69.2	66.8	72.6	69.8	67.4	△1.8
일반	74.1	67.8	74.2	75.4	70.8	△3.3
암	55.8	49.6	56.6	58.2	55.8	-
영유아	77.6	83.0	87.1	75.7	75.5	△2.1

^{* 2023}년도는 12.31일 청구기준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검진기간 연장 조치 등을 통해 '21년부터는 다소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성과분석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검진 서비스 강화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내 정서·사회성 교육(건강교육·상담)을 확대(2회→4회) 추진하는 한편,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안을 발표(*23.9.22, 소아의료보완 대책)함으로써 지역 병·의원 중심 소아의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학생검진 위탁 추진 실행력을 담보하였습니다.
 - * (복지부·교육부 국장, 공동단장) 여가부, 교육청, 질병청 및 학교장대표, 학부모 대표, 관련 의료계 등 13인 구성('23.5)
 - 아울러 청년층 정신건강검사 검진 주기 단축(10년→2년), 조기 정신증 검사* 및 C형 간염 검사 등 신규 검진항목 도입 검토와 골다공증**, 노인신체기 능검사*** 개선 추진 등 **검진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정신건강정책'예방-치료-회복'全단계 관리로 대전환」보도자료('23.12.5)
 - **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골디공증 검진항목 근거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4회)
 -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23.9~'24.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네이버(Naver)지식백과, 다음(Daum)백과사전 등을 통해 근거 기반의 올바른 암정보 제공^{*} 및 국가암검진 6대암 체험부스, 암 예방 10대 수칙 체험 캠페인^{**} 등을 개최함으로써 수검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 암정보 연간 조회 수 702만건 ** 캠페인 체험 및 참여자: 약 1천명
 - 국가암검진 과정(예약·수검·결과통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85.0%에 달하는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 ('23.1)하고, 발급방법을 다양화(인터넷 발급 등)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QR코드 활용 장애인 수어동영상 안내, 점자안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5개국어) 안내문 제공 등 취약계층(장애인, 의료급여자, 다문화가정) 맞춤형 검진안내로 검진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 및 자가 건강관리 지원으로 질병 이환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 (대사증후군 관리)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 대상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2023.12.31. 현재(단위: 명, %)

대상자 수		건강상	담 (건)		LMS	건강문고	
	합계	1차	2차	3차		건강실천안내서	질환예방안내서
7,246,170	406,097	363,896	41,614	587	3,526,219	309,486	21,923

- (영유아 건강검진 사후관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대상, 발달 정밀검사 안내 및 정밀검사비 지원을 통해 조기진단·치료 유도

2023.12.31. 현재(단위: 명, 건)

합계	건보상위	건보하위80%(차상위)	상담제공	보건소 연계
33,670	9,087	24,233 (350)	21,239	26,066

-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검진결과 등을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 * 만성신장질환, 뇌졸증, 심근경색, 당뇨, 심뇌혈관, 우리아이AI건강지킴이



(전략목표III)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성과지표

합계출산율(명)

□ 성과지표 개요

〈 합계출산율(명) 〉

■ 개념 : 여성 한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방법 : 통계청 출생통계 결과(매년 2월(잠정), 8월(확정))

■ 측정산식 : 합계출산율(TFR*) = $\sum_{i=15}^{49}$ (연령별 출산율); ÷ 1,000

* 연령별출산율(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 /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23년 측정결과

○ '23년도 합계출산율은 '24.8월 발표될 예정(잠정치 2월 발표)입니다.

○ 가장 최근 발표된 '22년 합계출산율('23.8월 통계청 발표)은 0.78명으로 '21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 수(만명)	35.7	32.6	30.3	27.2	26.1	24.9
합계출산율(명)	1.05	0.98	0.92	0.84	0.81	0.78
합계출산율증감률(%)	-10.2	-7.1	-6.0	-8.9	-3.4	-3.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



□ 성과분석

- o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 감소세가 지속은 **사회·경제·문화적 복합적요인**의 영향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혼인건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 혼인건수(증감률) : ('20) 21.4만건(△10.7%)→ ('21) 19.3만건(△9.8%) → ('22) 19.2만건(△0.4%)
- 다만,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5년과 비교할 때 와화되는 경향입니다.

(단위: %, 명)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결	출산율		1.05	0.98	0.92	0.84	0.81	0.78
전년대비	증	감		-0.08	-0.06	-0.08	-0.03	-0.03
	증 긴	, 률		-7.1	-6.0	-8.9	-3.4	-3.7

- 그간 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을 통하여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등의 누적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저출산 추세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월, 저고위)」에 따른 **5대 핵심과제 기대감이 향후 출산율 감소 추세 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5대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

- ① (돌봄·교육) ^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등
- ② (일·육아 병행) *육아기 근로단축·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등
- **③ (주거)** ^신혼부부 주거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공급 확대
- ④ (양육비용 지원)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 ⑤ (건강) ↑임신 前 건강관리 및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 '23년에는 상기 정책방향에 맞춰 전 부처가 저출산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지급, 난임지원 확대 등 출산 친화적 정책 도입 및 확대로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24년에는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 확대* 및 강화하였습니다
 - * 다자녀 가구(둘째이상) 첫만남 이용권 확대 (200만원→300만원)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원, 1세 35만원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고 수혜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정책관련도, 소득계층별, 지역별(세종시) 분석 등) 및 간담회(다둥이부모 간담회 등 5회, 진행 중) 진행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 및 저출산 통계지표('23.12)를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실증분석에 기반한 정책 마련 및 결혼·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5년은 가임여성에 해당하는 '9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출산 연령에 진입하는 시기이기에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90년대생(만명) : ('90) 65 → ('91) 71 → ('92) 73 → ('93) 72 → ('94) 72 → ('95) 71
 - ** **30대 초반**(30~34세) 인구(만명) : ('19) 330 \rightarrow ('20) 330 \rightarrow ('21) 334 \rightarrow ('23) 354 \rightarrow ('25) 367
- 5대 핵심과제 중심「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의 충실한 이행과 재구조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여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유직을 할 경우 최초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

<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비전

뫺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추

짔 저

랴

-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시회
- 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③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조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②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 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체계

[2]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목표IV)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성과지표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억불)

□ 성과지표 개요

---- 〈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억불) >---

 개념 : 보건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 수출입 통관자료 등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공한 통계(국가승인통계 아님)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조사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수출 품목

• 조사방법 : 관세청 수출입 통관자료 가공

• 측정산식 : 대외 무역거래 상품분류(HSK) 10단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에 해당하는 717개 품목에 대한 수출액 합계

□ '23⁶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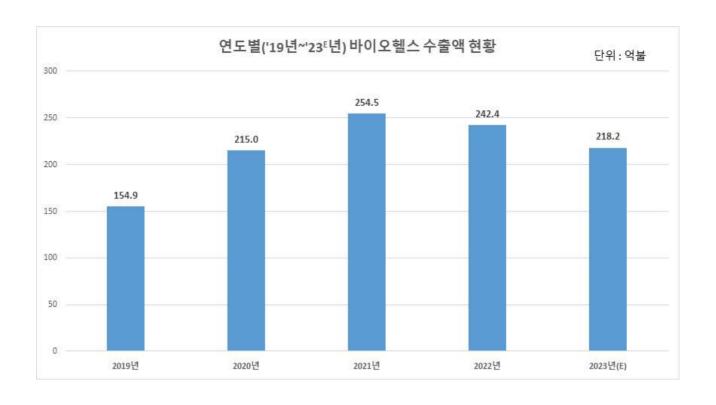
- 바이오헬스 산업 '23°년도 수출액은 218.2억불로 '22년도 242.4 억불 대비 24.3억불(10.0%) 감소하였습니다.
 - 의약품은 '23°년도 75.5억불 수출을 달성하여 '22년 80.8억불 대비 5.3억불(6.6%)이 감소하였고,
 - 의료기기는 '23°년도 수출액이 58.0억불로 '22년도 82.1억불 대비 24.1억불 (29.3%) 감소하였으나,
 - 화장품은 '23°년도 수출액이 84.7억불로 '22년도 수출액 79.5억불 대비 5.1억불(6.4%)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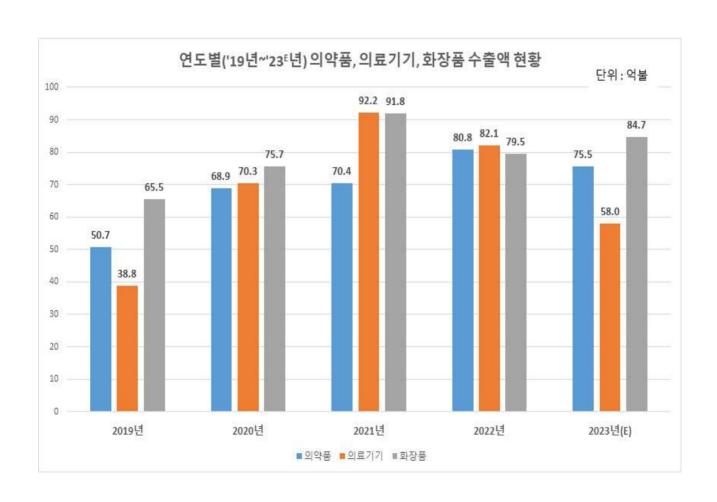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E)년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바이오헬스(계)	15,493	21,496	25,449	24,242	21,817	8.9
의 약 품	5,066	6,893	7,042	8,083	7,553	10.5
의료기기	3,878	7,032	9,223	8,206	5,798	10.6
화 장 품	6,548	7,572	9,184	7,953	8,466	6.6

주 : 2023년 수치는 연간 잠정치이며, 연간 확정치는 2024년 3월경 발표 예정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재가공





□ 성과분석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수립('23.3.24, 비상경제장관회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 (수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의약품)} 우수한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기)} 주력품목 해외판로 개척,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및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시장 진출 지원, ^{▲(화장품)} 중국 규제강화 대응, 한류 중심의 시장 다변화
- 바이오헬스 유관기관, 협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전문가 컨설팅,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제약기업 면담 등을 통하여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 'MSD 리서치데이'(8.8), 'AMGEN 피칭&바이오데이'(9.14~15),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위크'(11.14~17) 개최 등
-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정체 및 전체 산업의 수출 감소, 대외적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기조 및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규제 강화*, 코로나 안정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23년도 바이오헬스 수출액 218억원으로 '22년도 242억원 대비 10% 감소되었습니다.
 -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 '22년 9월)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강화(MDR, '21년 5월 시행, 등급에 따라 '28년 말까지 유예)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제출 의무 단계적 강화('22년~'24년)

- 「바이오헬스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23.3.24)의 적극 추진을 통해 바이오헬스 수출 증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수요가 높은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혁신 신약의 글로벌 본격 진출 및 고품질 국산의약품의 해외 판로를 개**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글로벌 임상시험 자금 조달 등을 위한 대규모 편드 조성하고,
 -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지원,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AI·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며,
 -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 대응 및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주력분야(영상진단, 치과재료 등) 수출 활성화 추진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겠습니다.
 - 국제기구, 단체, 글로벌 펀드 등(FIND, RIGHT FUND,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국제 조달시장 참여 지원하고,
 - 주요 수출국가 협회·단체, 글로벌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국가 유통망 확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화장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중국 수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정보 제공 확대*** 및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대**** 추진
 - '국가·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 구축 확대하고, '소비자 맞춤제작 비스포크(Bespoke) 화장품'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